

## 8)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서 최저조건을 명시하여 보장해 주는 노동보호법이다.

그런데 지난 1989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10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노동자가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자본의 영세성과 열악성으로 인해 더더욱 나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음을 간과한 규정이다.

또한 이같은 적용범위 제한으로 인해 1990년 7월 현재(『동아일보』, 1990년 7월 28일자 기사 참조) 일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기피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실제로는 5인 이상 고용하면서도 정규직원 숫자는 4인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임시직 형태로 고용하는 편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해고예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고예고제도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실직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나, 현행법상 30일로는 실제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1990년 7월 3일 사용자의 무분별한 폐업이나 집단해고를 제한하고 해고예고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1990년에 들어서만도 1990년 1월 대한광학 공장이전, 1990년 2월 크라운전자 실질 폐업, 1990년 8월 동국실업 생산라인 폐쇄 등 사업

주의 업종전환, 폐업, 공장이전, 휴업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의 연장과 더불어 휴폐업수당의 신설 등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 10)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채권시효)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체불한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채권시효 소멸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특수성상 노동자는 자신의 안정된 직장생활(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용자의 상습적인 연월차수당, 연장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일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기간이 10년임을 감안한다면, 노동자의 임금채권시효를 3년에 한정함으로써 3년 후면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사후적으로 합리화되어 버리는 것도 여타 민사관계나 상사관계에 비해 불리하여 이는 사회적인 보호성이 강조되는 노동법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일례로 1990년 퇴직한 서울 영등포소재 신명전기(주)의 경비원 반재덕 씨(53세)는 20여 년간 꼬박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휴일없이 해 오면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퇴직 이후 근로기준법 제41조의 제한규정에 의해 20여 년간의 미지급수당 중 퇴직직전 3년치밖에 받을 수 없었다.

## 제 4 장 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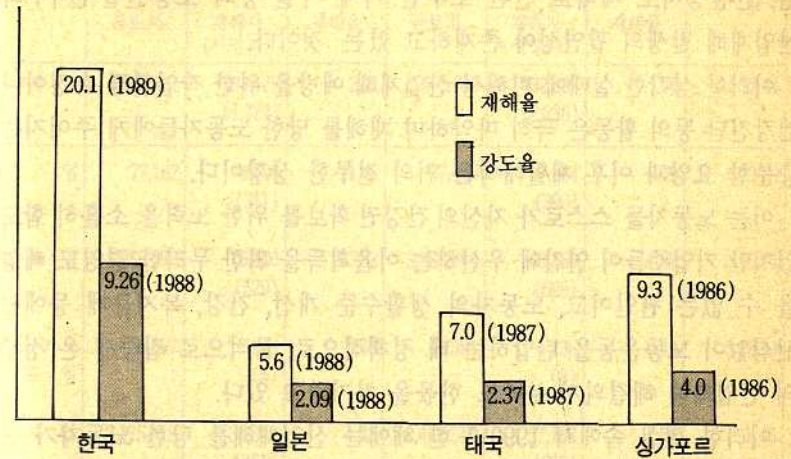
### 1. 1990년 산업재해의 특징

고도성장, 수출 한국, 한강의 기적 등으로 한국의 경제를 일컫는 대명사의 뒷면에는 더욱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기업주들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 효과만을 우선시하는 정부에 의해 손가락이 잘리고, 눈이 멀게 되고, 귀가 안들리게 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 작업현장에서 사고로 손가락이 잘린 노동자들의 손

〈표 1〉 주요 국가 간의 산업재해 도수율 및 강도율비교<sup>1)</sup>



〈표 1〉에서와 같이 세계 1위의 산재 발생국이라는 명예(?) 속에서 해마다 14만 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입어 1980년 이후 1990년까지 10년 동안 총 140만 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다. 이 숫자는 6·25 전쟁 당시의 사상자수가 97만 명인 것과 비교해 볼 때 7년마다 총만 들지 않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이다. 더 많은 이윤이라는 목표가 있는 한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는 새로운 기계화를 통한 경영보다는 산재 노동자에게 인간값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주는 것이 경영의 수지 타산에 더 맞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1) 도수율 =  $\frac{\text{총재해건수} \times 1,000,000}{\text{총노동시간}}$       강도율 =  $\frac{\text{총노동손실일수} \times 1,000}{\text{총노동시간}}$

자료 : 『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돌베개, 14쪽.

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저임금으로 인해 부족한 생계비를 메우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철야작업, 안전장치도 제대로 안된 노후한 기계 시설 등의 노동현실에서부터 산업재해 발생의 필연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실태에 비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진단 등의 활동은 극히 미약하며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요양과 이후 재활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함도 있지만 기업주들이 인간에 우선하는 이윤획득을 위한 무리한 경영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고,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 건강, 복지문제 등에는 관심없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정책적으로, 물적으로 집중해 온 정부의 산업재해 해결의지 부족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990년 한 해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총 132,893명으로 보고되었고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2,236명으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표 2〉 연도별 재해자수

연도	근로자(명)	재해자수(명)	사망자수(명)	재해율(%)
1988	5,743,970	142,329	1,925	2.48
1989	6,687,821	134,127	1,724	2.01
1990	7,563,655	132,893	2,236	1.76

자료 : 노동부 통계자료,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

이는 하루 평균(연 300일을 기준으로 할 때) 443명의 재해자가 생기고 있으며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7.5명이나 됨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수적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보관·

2) 한국에서의 산업재해 통계수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만 집계되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20% 정도만이 산재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현장 내에서 처리되어 실제 산업재해는 이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 노동부 통계자료,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과 노동부 보도자료 「1990년도 산업재해발생현황」, 1991년 2월 23일.

〈표 3〉 업종별 재해자수(노동부, 「1990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업종	'89. 1.월 ~ 12 월			'90. 1.월 ~ 12 월			증 감
	근로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율	근로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율	
계	6,687,821	134,127 (1,724)	2.01	7,563,655	132,893 (2,236)	1.76	△12.44
광업	77,162	8,796 (311)	11.40	87,416	7,684 (390)	8.79	△22.89
제조업	3,259,093	75,820 (529)	2.33	3,687,844	68,869 (626)	1.87	△19.74
전기·가스 수도업	39,697	240 (5)	0.60	48,354	236 (8)	0.49	△18.33
건설업	2,175,312	30,845 (461)	1.42	2,412,340	37,102 (673)	1.54	8.45
운수·보관 통신업	538,069	12,066 (274)	2.24	615,821	12,170 (338)	1.98	△11.61
기타산업	598,488	6,360 (144)	1.06	711,880	6,832 (201)	0.96	△9.43

통신업 순으로 나타났으나 재해율이 높은 순으로는 광업이 가장 으뜸으로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산업재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3 참조).

사고가 대형화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특히 사망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산재로 인정되고 이후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자살자가 생기는 등,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노후한 기계시설, 환기장치가 제대로 안된 작업실, 안전교육 미 실시)에 놓여져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요양과 보상에서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놓여 있다.

이에 1990년에 보고된 산업재해(사고성재해, 직업성재해)를 살펴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제도적 측면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 2. 산업재해의 실태

### 1) 사고성 재해<sup>3)</sup>

#### (1) 건설업에서의 재해

1990년에 건설업종의 재해는 총 재해자 수는 37,102명이고 사망자는 673명(전년 461명)으로 사망자가 특히 급증하였다(표 3 참조).

건설업종은 원래 업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보호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옥외작업과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기후변

〈표 4〉 30대 기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재발생율	사업장명(법인세 순위)	총근로자수(명)	재해자수(명)	사망자수(명)	재해율(%)
1	현대중공업(30위)	22,292	4	2	2.20
2	동아건설(18위)	5,178	103	1	1.98
3	만도기계(20위)	2,180	41	.	1.88
4	인천제철(25위)	2,939	49	.	1.66
5	럭키개발(15위)	12,930	114	3	0.88
6	호남석유화학(14위)	568	5	.	0.88
7	동국제강(13위)	237	2	.	0.84
8	대한항공(주)(4위)	8,477	71	.	0.83
9	태광산업(주)(6위)	642	5	.	0.77
10	현대건설(10위)	188,307	1,393	14	0.74
11	대림산업(주)(17위)	68,891	508	11	0.73

자료 : 1990년 9월 국회제출자료 중에서

3) 산업재해는 사고성재해와 직업성재해(직업병)으로 나뉘어진다.

동에 따른 무리한 공사 진행) 이유로 재해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건물 이 대부분 대형화, 고층화되는 추세에서 더욱더 재해가 빈발해지고, 대형화 되고 있다.

이는 특히 법인세 소득 순위 3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서 사망자수가 많은 업종이 건설회사인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표 4 참고).

정부에서는 1990년에 사망자와 중대 재해 발생이 증가한 원인을 ① 건설경기 호황으로 인한 건설물량의 대폭 증가—200만 호 주택 건설사업, 지하철, 서해안 개발, 임대료 상승에 따른 건설수요의 확대 ② 안전관리체제 및 활동이 미흡한 영세 수공업자의 급증 ③ 전문 기능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미숙련 기능공의 대량 투입 등으로 밝히고 있다.<sup>4)</sup>

물론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업종에서의 미숙련 기능공(특별한 직장이 없을 때 하루 공사장 막노동을 하고 일당을 받는다)들이 많은 점과 절대적인 건설물량의 증가로 인해 재해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자들이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이윤 확대만을 추구할 뿐 안전시설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져야 한다.

1990년 3월 5일 어느 빌딩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이회구씨는 7층에서 떨어진 쇠파이프로 된 보조다리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sup>5)</sup>

또한 5월 23일 전남 벌교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던 정정호(38세, 남)씨도 3층에서 추락하여 사망<sup>6)</sup>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2m 이상 작업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안전망만 설치하였더라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재해이다.

게다가 (주)흥화공업에서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조치 미비로 7월 3일 김시성씨(31세, 남)가 사망한 데 이어 한 달이 지난 8월 18일에 똑같은 현장에서 김문호씨(30세, 남) 등

4) 노동부 국회 제출자료

5) 산업재해 노동자연맹 발간회보, 『산재통신』 5월호

6) 산업재해 노동자연맹 발간회보, 『산재통신』 8월호

3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계속해서 재해가 발생<sup>7)</sup>하였다. 이는 사전이나 사후에라도 안전시설을 완비하여 사고의 사전예방이나 재발방지에 힘쓰기 보다는 사고난 이후 적당한 수준에서 보상금이나 주어 해결하려는 건설업계 사용자들의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 (2) 제조업에서의 재해

#### • 작업현장에서 위협받는 노동자 목숨

- 1990. 3. 9 불꽃놀이용 폭죽제조회사에서 폭죽에 폭약을 넣는 작업중 폭발하여 김승근씨(37세, 남) 사망(「한겨레신문」, 3월 11일자)
- 3. 18 버스정비업소에서 차량정비중 망치질하다 쇠파편이 눈에 들어감
- 4. 25 카터기 작업중 쇳조각이 눈에 들어가 눈을 다침
- 5. 24 석재회사, 시약 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을 다침
- 8. 12 베니어판 접착공장에서 보일러가 터져 이양호씨(30세, 남), 김석일씨(27세, 남) 입원치료(「한겨레신문」, 8월 12일자)
- 8. 15 플라스틱 김치통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김재례씨(47세, 여), 압출기에 끼어 사망(「동아일보」, 8월 16일자)
- 9. 28 유리절단작업중 휠에 왼손이 들어가 검지, 중지의 힘줄이 절단.
- 11. 9 빔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다침(노동인권회관 상담사례)

위의 사례들은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물질이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들이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작업에 임하기 전 안전교육을 받지도 않고 안전모, 방호구 등의 건강보호조치도 없이 위험에 그대로 내맡겨진

7) 「한겨레신문」, 8월 29일자.

상태로 일하고 있다. 산재발생의 원인비율로 보면 노후한 기계에 의한 사고가 많다.

군산에 있는 우민주철에 근무하던 신순선씨(36세, 남)가 피복이 벗겨진 전동기로 작업을 하던 중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하였다.<sup>8)</sup> 또한 '손 짜르는 빨간 기계'로 유명한 프레스에 의한 절단사고로 경기도 부천시역에서는 1년에 두 가마니에 해당하는 손가락이 나온다는 말이 퍼져 있을 정도인데, 이 절단사고의 대부분이 낡은 프레스 기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량한 작업환경도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이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고압류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강민호씨(26세, 남)는 3월 28일에 입사하여 하루 12시간씩 알루미늄을 꼬아 전선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강씨는 이틀째 계속 야간작업을 하던 4월 4일 새벽 1시에 알루미늄 폐선을 치우기 위해 통로에 놓여져 있는 로울러 연선기 옆을 지나다가(1분에 200~300회 회전) 알루미늄선 가다미 연선기에 휘말려들어가면서 몸까지 말려들어가 사망하였다.<sup>9)</sup>

#### • 주거현장까지도 위협받는 노동자 목숨

- 1990. 2. 17 서울 성수동, 삼호기전에서 화재 발생. 같은 건물 안에 있던 칠공장으로 불이 번져 칠공장 노동자 2명 사망(「동아일보」, 1990년 2월 17일자)
- 4. 17 서울 용두동, 무허가 건물 1층에서 불이나 지하로 번지면서 지하 1층에 있던 인쇄소 직원 등 5명 사망, 7명 중화상(「한겨레신문」, 4월 18일자)
- 4. 19 서울 구로동,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서 지하에 있는 봉제 인형공장에서 불이나 3·4층에 살던 주민 5명 사망(3·4층 구조는 부엌달린 방 1칸으로 된 일명 닭장집)(「동아일보」, 1990년 4월 19일자)

8) 「전국노동자신문」, 1990년 9월 14일자.



▲ 다락방에서 잠을 자다 침변을 당한 나이 어린 두 노동자의 생전 모습(왼쪽 이영구 군, 오른쪽 이미영 양)

11. 21 서울 동대문 상가, 아파트 3층에 있는 의류 하청공장에서 불이나 이 공장 안에서 잠자던 이미영(21세·여·미성사), 이영구(15세·남·시다) 사망(이미영·이영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유인물)

영세한 자본의 사용주들이 임대료가 싼 지하공장, 가건물 등을 전전하며 공장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기숙시키는 일이 적지 않다.

9) 「한겨레신문」, 1990년 4월 8일자.

이 경우 노동자들은 가장 편안해야 할 잠자리에서조차도 목숨을 위협당하며 살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작업현장에서뿐 아니라 잠을 자는 기숙사에서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내 준 예가 1990년 11월 21일 동대문상가에서의 화재이다. 청계천 동대문상가에 있는 3·4평 규모의 공장에서 매일 아침 9시~저녁 10시까지 일하면서 월급 25만 원씩을 받고 있던 이미영, 이영구 두 노동자는 공장 천정을 합판으로 가로질러 만든 다락방에서 잠을 자다 불이 나서 사망하였다(누전에 의한 사고).

이 청계천 지역은 20년 전 전태일 선배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산화해 간 지역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근로시간 등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작업장 다락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숙사로 사용하였음에도 근로감독 한번 실시하지 않은 사실들이 밝혀져 더욱 경악케 하였다.

• 기업주의 무리한 경영으로 위협받는 노동자 목숨

1990. 6. 2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화약화재 발생  
김우수(45세, 남) 반장 사망(「동아일보」, 6월 27일자)

11. 15 풍산금속 안강공장 202 제조부에서 화약이 폭발, 작업중이던  
노동자 14명 중화상입고 입원(「한겨레신문」, 11월 16일자)

경상북도 안강에 소재하고 있는 (주)풍산금속은 화약을 제조하는 업체로 8,000명을 고용하고 부평·부산·동래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는 1급 방위산업체이다.

지난해(1990년) 11월 15일 안강공장 202 제조부 개발실에서 섬광탄 IRF의 섬광제 조립 도중 ‘퍽’ 소리와 함께 불길에 휩싸이 14명 전원이(남 12명, 여 2명) 20~90%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이 중 5명이 사망하였다.<sup>10)</sup>

10) 「한겨레신문」, 1990년 11월 16일자.

〈표 5〉 풍산금속 사망 사고 내역 (1988년 1월~1990년 12월)

번호	부서	직급	성명	재해일시	사고내용	생년월일	비고
1	품관5부	기능1급	정구일	1988. 7. 18	품관5부 관통시험장에서 B <sub>2</sub> W·B유탄 관통 시험중 폭발사고	1956. 11. 19	사망
2	102부 LAP	기능특급	이동식	1989. 12. 9 11시35분경 08시28분경	102부 기폭제 혼합공실에서 B <sub>2</sub> W·B용 M <sub>56</sub> DETONATOR 기폭제 작업준비중 원인미상의 폭발사고	1947. 1. 30	사망
3	301부 BP	기능특급	김수수	1990. 6. 2 01시56분경	301부 B.P. D/L LINE PACK OUT 포장공실에서 D/L B.P. 스크린 작업중 모터에 불꽃이 일어 화재폭발사고	1945. 1. 14	사망
4	101부	기능2급	한준식	1990. 11. 5 4시20분경	202부 2개발실 섬광탄 조립공실에서 작업하던 중 섬광탄 발화하여 화재	1964. 10. 24	치료중사망 11. 17
5	자재부	기능3급	이희자	.	.	1967. 6. 15	치료중사망 11. 26
6	202부	기능3급	이광우	.	.	1967. 2. 28	치료중사망 11. 26
7	방호실	기능3급	김관숙	.	.	1967. 5. 4	치료중사망 11. 26
8	301	기능1급	송용수	.	.	1960. 8. 8	치료중사망 12. 30

자료 : 풍산금속 노동조합 보관자료

사고 당일의 상황을 보면 4명이 정원인 작업실에 무려 14명을 투입하고 14명 중 13명은 모두 타부서에서 파견되어 온 비전문 지원 작업자였다. 작업장소 또한 섬광제를 조립하는 작업실이 아니라 제품개발실을 임의로 개조한 곳이었고 위험한 작업인데도 안전유지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사고는 당일의 안전교육, 안전유지자 미비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비전문 요원들을 정원을 초과하여 작업을 진행시킨 기업주의 무리한 경영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풍산은 연초에는 '경영난과 합리화'를 내세워 1,140명을 감원시키겠다고 하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축시켜 왔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연말에 와서는 납기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역사원 400명을 새로

투입하고, 그래도 생산물량의 달성이 어려워지자 하루 4~7시간에 이르는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비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도 여전히 실제 작업과정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가 난 기계에서 다시 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반복재해가 되풀이되고 있어 근본적인 산재예방은 아직도 요원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89년에 비해 1990년에는 재해율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표 3 참조) 유해인자, 불량한 시설 등으로부터 노동자 생명의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광업에서의 재해

앞의 〈표 3〉에서의 같이 광업에서의 재해는 업종별 재해율 8.79%로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총 재해자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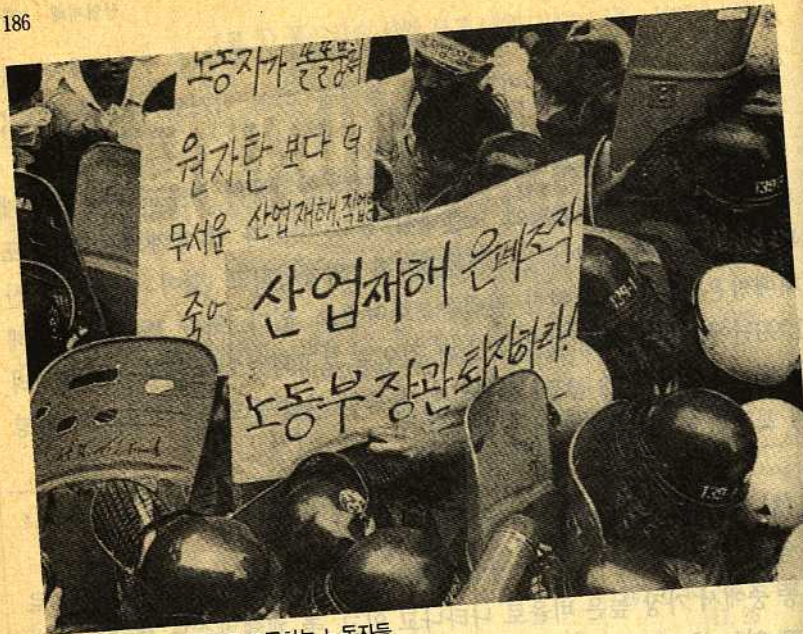
〈표 6〉 광업 연도별 총 재해자수

연도	1980	1982	1984	1986	1988	1989	1990
총재해자수	8,999명	10,827	10,964	10,648	9,674	8,796	7,648

자료 : 「광산 노동자의 현실」 중에서.

이는 탄광 합리화조치로 폐광하는 탄광이 늘어가고 있음으로 해서 절대적인 재해자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들은 더 깊은 굴속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업에서의 재해는 낙반, 붕락, 발파, 가스질식 등이 주된 종류를 이루는데 1990년 7월 17일 문경에 있는 봉명광업소에서 가스질식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광부 3명이 갱 속 2,300m 지점으로 철제지주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갱 안에 들어갔다 심한 두통을 느껴 철수한 뒤, 두통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생산부장 김종환(45세, 남), 안전계장 이상구(45세, 남), 생산부직원 박시용(33세, 남) 등이 갱 안으로 들어갔다 메탄가스로 추정



▲ 산업재해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되는 가스에 질식되어 숨진 사고였다.<sup>11)</sup>  
또한 동원탄좌 채탄부에서 16년간 일해왔던 송경현씨는 9월 7일 막장에서 탄을 캐는 도중 탄이 천정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사망하였고, 동원탄좌 임동원씨는 갱 안의 30~40도 경사지에서 화약을 터뜨린 후 탄을 켈 준비를 하던 중 탄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 이 탄에 묻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sup>12)</sup>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대기업이든 아주 적은 2~3명 규모의 공장이든간에 관계없이, 또 어느 업종이냐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라는 노동현실과 유해물질, 불량한 시설에 자신들의 목숨이 그대로 내맡겨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노동자, 기업, 정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11) 「조선일보」, 1990년 7월 18일자.  
12) 광산지역 산재문제연구회 보관자료.

## 2) 직업병

우리나라의 직업병 유병율은 0.2~0.26%로 일본의 0.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병 환자의 대부분은 진폐증이 제일 많고 소음성난청, 납중독의 순으로 나타났다.<sup>13)</sup>

〈표 7〉 연도별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현황

연도	대상근로자수	수진근로자수 <sup>14)</sup>	계	질병자(명)		질병율(%)	
				일반병	직업병	일반병	직업병
1987	3,481,893	3,212,772	87,747	80,897	6,850	2.5	0.21
1988	3,835,812	3,835,812	86,264	77,856	8,4208	2.0	0.22
1989	6,687,821	3,467,135	86,459	78,891	7,568	2.28	0.22

자료 : 1990년 노동부자료.

〈표 8〉 1989년 직업병 유소견자 현황

3,937명	3,410명	135명	27명	23명	21명	15명	
(진폐증)	(소음성난청)	(크롬중독)	(납중독)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중독)	기타	총 7,568명

자료 : 「한겨레신문」, 1990년 8월 11일자.

산재발생율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이 더 직업병 유병율이 낮다는 점과, 전체 수진 근로자 중 2%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광산노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직업병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는 아직 우리나라의 직업병 통계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준다(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정부의 직업병 은폐 노력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강

13) 직업병에 대한 정부통계는 1990년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전부 1989년 통계를 사용하였다(「한겨레신문」, 1990년 8월 11일자).

14) 수진근로자 : 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



검진 등이 원인이다).

일본의 직업병 유형은 작업양태에 기인하는 질병이 좀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직업병은 진폐, 소음성난청이 제일 많고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이 계속 보고되고 있는 수준이며, 작업양

〈표 9〉 일본의 직업병 발생현황

질병분류	발생건수(명)
1)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5
2) 유해광선으로 인한 질병	—
3) 전리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8
4)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질병	670
5) 이상온도조건으로 인한 질병	24
6) 소음으로 인한 31의 질병	23
7) 2)~6)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	124
8)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운동기질환 및 내장탈	380
9) 부상에 의하지 않은 업무상 요통	59
10) 진동장해	127
11) 수지·전완의 장해 및 경견완증후군	43
12) 8)~11)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	17
13) 산소결핍증	382
14)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암제외)	1,401
15) 진폐 및 진폐 합병증	69
16) 병원체로 인한 질병	—
17) 전리방사선으로 인한 암	3
18) 화학물질로 인한 암	1
19) 17), 18)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암	4
20) 그 외의 업무로 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
합 계	12,510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3, 4, 5, 6, 7, 8, 9, 10, 11, 12)

직업양태에 기인하는 질병 (8, 9, 10, 11, 12)

암 (17, 18, 19)

태에 의한 질병이나 암 등은 노동자들이 앓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보고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1990년에는 이미 알려졌던 직업병 이외에 중금속 중독으로 여전히 수는 중독이 보고되어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망간중독이 직업병으로 처음 판정받게 되었으며 기계독,<sup>15)</sup> 원단독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던 피부염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VDT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반복동작으로 인한 경견완장해 이외에 사경증(목이 돌아감) 환자가 보고되었다. 방사선 누출사고에 대한 직업병 인정기준이 없어 새롭게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진폐증—장기입원으로 인한 생활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진폐증

폐에 탄가루가 쌓여 굳어져서 생기는 진폐증은 한국의 직업병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병으로 '직업병의 암'이라 불리우고 있다.

〈표 10〉에 의하면 탄광에서 10년 정도 일한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진폐증에 걸려 있으며, 20년 이상을 일하면 거의 대부분이 진폐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표 10〉 근무경력에 따른 진폐증 유병률

근무경력	대상자수(명)	진폐증(의사진폐증포함)명	비율(%)
5년이하	6,471	461	7.1
6~10년	1,983	640	32.2
11~15년	517	261	50.5
16~20년	145	82	56.6
20년이상	38	29	76.5

자료 : 가톨릭 산업의학연구소

15) 기계독, 원단독 : 기계에 의해서, 또 옷 만드는 원단들을 만짐으로 인해 생기는 피부 가려움증 등 피부이상.

전체 직업병 중 가장 많은 수(393명—광업 3,378명, 기타 559명)를 차지하고 있는 진폐증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곳은 15개소이며 현재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환자들 중 이곳에 요양하고 있는 환자들의 수는 1,607명이다.<sup>16)</sup>

이 병원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병의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보면, 탄광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1983년도에 진폐증으로 동해 병원에 입원하여 8년째 병원문을 못나서고 있는 장성열씨(56세, 남), 막장에서 일한 지 9년 만에 진폐 11급 판정을 받아 7년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허복이씨(53세, 남) 등이 코 속에 끼워진 산소공급튜브에 의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특히 경동탄광 노동자로 10년간 일하다가 진폐판정을 받고 1987년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이용호씨(50세, 남)는 병을 비판, 계단 베란다에서 10m 아래 병원마당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폐증으로 입원하면 휴업급여나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미쳐 부인들이 공사장 품팔이나 파출부로 일해 끼니를 잇고 자녀들도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돈벌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자살한 이씨의 부인도 공사장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한다.

진폐증은 탄광에서만 뿐만 아니라 탄광을 떠난 이직자들에게서도 발견되고, 탄가루나 분진이 있는 공장에서는 전혀 일해본 적도 없었던 지역주민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산에서 일하다가 10년 전 서울로 이사온 후 장송학씨(66세, 남)는 호흡곤란, 온몸이 쭈시는 증세로 진폐증인 줄 상상도 못했다가 1990년 12월에 X선 촬영 후 진폐 판정을 받았다.<sup>17)</sup>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절대적인 광부의 숫자 감소로 진폐증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직자들에게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직자까지 포함하는 검진이

16) 「매일경제신문」, 1990년 6월 17일자.

17) 「한겨레신문」, 1990년 4월 21일자.

이루어진다면 좀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직업병이다.

진폐증은 탄광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1990년에는 서울에 있는 유리공장 노동자 2명에게서도(조병환·65세, 이계운·50세) 발견되었고, 마닐라 로프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폐에 먼섭유가 쌓여 호흡곤란증세를 보인 최진익씨(42세, 남)도 면폐증 환자로 판명되었다.<sup>18)</sup>

부산지역의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300여 군데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철강제작업, 탄환결합원, 타이어공업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16명이 진폐증인 것으로 알려졌다.<sup>19)</sup>

부산에 있는 연탄 제조업체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살던 지역주민 박창근씨(47세, 남)가 1990년 5월 진폐증으로 판명되었고, 서울의 연탄공장 주변주민 759명 가운데 5명이 진폐증 환자로 밝혀져 이제 진폐증은 단순히 공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공해문제로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sup>20)</sup>

## (2) 납중독—회사의 규정이 불려온 살인

충전지 제조업과 인쇄소 문선공 등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되었던 납중독이 1990년에는 좁은 맨홀 안에서 작업하는 전화선로원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전화 선로원(전람원)들은 맨홀에서 통신 케이블을 연(납)으로 연결하는 용접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 4~5시간씩 일하며, 비가 오면 사고가 잦아 보수작업이 늘어나 밤샘작업도 해야 한다. 맨홀 안은 지하수나 분뇨로 인한 유해가스가 늘 스며 있고 절대적으로 산소량이 부족하며, 납으로 된 선로관을 램프로 녹여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다량의 납증기를 그대로 마시게 되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18) 「동아일보」, 1990년 9월 8일자.

19) 「중앙경제신문」, 1990년 12월 22일자.

20) 「한겨레신문」, 1990년 8월 30일자.

〈표 11〉 오존 및 피에 함유된 납검사 기준

검사항목	정상범위 (A·B급)	주의한계 (C급:요주의자)	선별한계 (D급:유소견자)
피에 함유된 납 (mg / l)	40 미만	40~60	60 이상
오존에 함유된 납 (mg / l)	80 미만	80~150	150 이상
전람원 4,313명의 경우(89년 7월~ 10월, 고대환경의 학 연구소)	2,770명	1,513명 서울894, 부산755 경기541, 대구510 충청417, 기타	30명 대구 7, 서울 3 부산 5, 제주 3 기타

한국전기통신공사측이 1989년 7월 전람원 4,313명을 대상으로 고대환경 의학연구소에 의뢰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30명이 직업병으로(직업병 유소견자), 1,513명이 직업병 요주의자로 판정을 받았다(1989년 7~10월 고대환경의학 연구소).

이 중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 직업병 판정을 받은 홍성림씨(45세, 남)를 비롯하여 근무한 지 3년 만에 직업병 요주의자 판정을 받은 이창현씨(27세, 남)도 포함되어 있다.

전기통신공사 소속 정태문씨(56세, 남)의 경우는 맨홀 작업에 의해 직업병을 얻은 환자이면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더욱 죽음의 길로 내몰린 예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정씨는 1969년에 입사 선로관 공사일을 해오다 1974년부터 납중독으로 고생하였다. 심한 복통, 손발저림 등으로 11년 가까이 고통받으면서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밤새도록 팔다리를 주무르고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하는 형태로 해오던 중 1986년에 비로소 납중독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게 되었다.

1989년 2월 증세의 악화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치료를 해오던 중 1990년 2월 “업무수행중 다치거나 질병을 일으킨 경우 병가 1년을 가질 수 있으며 병가가 끝나도 출근치 않은 경우 자동 휴직처리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 면직된다”는 회사측 규정으로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다시 출근하였다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1990년 10월 21일 사망).

이 규정뿐만 아니라 통신공사측은 1987년 7월부터 1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지급하면서(납중독에 돼지고기가 좋다는 소문에 따라) 납중독을 은연중에 시인해 왔으며 정씨의 사건이 여론화되자 의식불명에 놓인 사람에 대한 ‘장례대책’을 미리 세워 공문으로 제시해 놓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정씨의 납중독은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받는 고통과 직업병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도 직장을 잃지 않고 완쾌될 때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3) 수은중독—노동부의 임시방편적인 작업환경 측정이 불러온 재해

1987년도에 15세의 어린 소년 문송면군을 죽게 한 이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수은중독이 1990년에는 노동자 5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구로공단 내 오리엔트전자에서 집단적으로 발견되었다. 오리엔트 전자회사는 1971년에 설립되어 1989년 한 해만도 7억 5천만 원의 흑자를 낸 회사이다.

그러나 작업환경을 보면 작업장 바닥에 버려진 수은이 체폐에 제거되지 않아 그대로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고, 진공청소기로 가끔 청소하지만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거나 제거된 수은도 하수도나 쓰레기하치장에 그대로 버려왔다. 또한 수은 작업실에는 가장 중요한 환기장치인 국소 배기장치도 없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환풍기만 돌아가며 작업하는 근로자들도 특별한 보호용구도 없이 흔히 쓰는 면마스크만 쓴 채 작업에 임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여러 용제의 성분도 모르는 채 일해 왔다. 때로는 구슬모양의 동그란 수은을 가지고 장난까지 치기도 하였던 형편이었다.

1989년초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노조측에서는 수은중독에 대한 우려로 유해작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회사에 개선책을 요청했으나 번번히 묵살해왔다. 이에 1990년 4월 노조가 중심이 되어 노조와 개인부담으로 수은에 대한 검사를 구로의원에서 받았다.

〈표 12〉 오리엔트 전자 노동자의 혈중·노중 수은농도

	소변(ug/l)	혈액(ug/100ml)	
23. 여	10개월근무 (펌핑부서)	188.92	미량 두통, 기억력저하, 메스꺼움, 손떨림, 관절통증
24. 여	1년2개월근무 (펌핑부서)	164.7	2.0 목이 답답, 기침, 토하기도 함.
19. 남	1년2개월 액티베이팅실근무	333.78	4.8 불면증, 체중감소, 집중력 저하, 기침, 손떨림
27. 여	1년2개월근무 펌핑부서	140.73	7.49 체중감소, 기억력, 집중력 저하, 자주우울, 설사변비
23. 여	1년1개월근무 액티베이팅실근무	76.8	9.94 손발 붓고, 늘 피로, 기침, 숨이 참, 손떨림
23. 남	1년2개월근무 액티베이팅실근무	77.02	11.72 신경예민, 체중감소, 기억력 집중력 저하

자료 : 구로의원 검사결과.

〈표 13〉 노동부 직업병 인정 수은 기준치

	소변(ug/l)	혈액(ug/100ml)
참고	50 미만	3.5 미만
주의한계(요주의자)	50~30	3.5~7
선별한계(수은중독)	300 이상	7 이상

검사자 12인 모두 피로, 두통, 손떨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 중 2명은 피검사, 소변검사에서 직업병 선별 한계를 넘어서는 수은중독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질 취급업체는 6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sup>21)</sup>는 법의 규정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이

21) 산업안전보건법 42조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시행규칙 93조 : 유기용제 업무를 행하는 육내 사업장

회사 설립 이래로 20년 동안 한 번도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는 1987년에 문송면군의 죽음으로 인해 수은중독문제가 사회에 여론화되었을 때 노동부에서 전국 18개 수은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오리엔트전자의 수은중독문제가 여론화되자 노동부(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한다고 회사를 방문하던 날 관리자들이 미리 청소를 하고 환풍도 한 것을 보면 노동부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사건이 여론화 될 때마다 정부는 사후에 정밀감독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과 정밀감독만으로는 제 2, 제 3의 수은중독환자가 계속 보고될 수밖에 없다.

(4) 망간중독

망간중독은 1990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보고된(「동아일보」, 1990년 5월 1일자) 직업병이다. 충북 영동에 있는 영동화학공업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5명 중 3명은 입원 요양중이고 1명은 요양을 마치고 장애급여를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1명은 경미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어 그동안 추측만 되고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던 망간중독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5) 카드뮴·크롬중독

1990년 11월 15일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현대정밀 노동자 2명이 카드뮴 혈중농도가 정상인의 2.5~14.5배 혈중농도가 1.5~3.4배로 많이 축적되어

시행규칙 98조 :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 대상작업은 유기용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시행규칙 99조 ③ : ……특정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있어 직업병으로<sup>22)</sup> 판정되었다. 이들은 특수 용접봉으로 용접하는 과정에서 떠도는 카드뮴을 흡입했기 때문에 증독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수 용접이 필요한 모든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한다.

크롬중독은 도금업체에서 많이 발생해온 직업병으로 1990년에도 여러 건이 발생하였다. 부산 칠성공업사에서 1978년에 입사하여 11년간 도금부에서 일해온 박순례씨(44세, 여)는 1.5mm×1.0mm 크기의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 천공(코뿔뿔)임이 판명되어 조립부로 작업 전환을 하였다.<sup>23)</sup>

도금업체인 음성공업사 이재수씨(34세, 남)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작업환경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대기업인 인천의 대우자동차 생산공장에서도 이동호(31세, 남, 1986년 6월 입사), 함만철(53세, 남, 1973년 1월 입사)씨가 비중격 천공환자로 판명되었다.<sup>24)</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금속에 의한 직업병들을 보면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취급하고 있는 중금속의 유해성을 잘 모른다는 사실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문제, 정부의 미온적 말단적 방침문제 등이 확인된다.

**(6) 직업성 피부염**

미국에서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보고된 직업병 중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 피부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극소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직업병이다.

1990년에는 현대자동차서비스(주) 도장반에서 근무하던 김상필씨(35세, 남) 등 3명이 직업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산재요양신청이 인정되었다.

22) 「동아일보」, 1990년 11월 17일자.

23) 「한겨레신문」, 1990년 8월 8일자.

24) 「한겨레신문」, 1990년 5월 4일자.

〈표 14〉 직업성 피부질환 발생현황(노동부 통계)

연도	80	82	83	84	85	86	87	88	89
건수	1	2	0	6	8	0	0	2	1

김씨는 1983년부터 사고차량의 칠이 벗겨진 부분에 경화제를 바르고 도료를 입히는 일을 해왔는데 4년 전부터 손바닥이 딱딱해지고 칼에 베인 듯한 통증과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이 나쁜 줄 알고 간기능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던 김씨는 1990년 4월 도장반 근로자 30명 중 10명이 비슷한 증세인 것을 알고 이 중 2명과 함께 직업병 검진을 받아 산재치료를 받게 되었다.

버스 운전기사 이훈배씨(43세, 남)도 1987년 4월부터 기사로 일해오던 중 1990년 7월 엔진에서 나오는 매연과 열로 인하여 양쪽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다리가 부어 신발조차 신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업무와 관련된 접촉성 피부염과 모낭액 이차감염으로 진단받아 10월에 노동부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직업성 피부질환은 회복과 악화가 반복되는 일이 많고 일과성이 많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쉽지 않고 다른 직업병보다 관심이 낮아 제대로 발견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대자동차서비스(주)에서 발생한 직업성 피부염이 직업병으로 승인됨으로써 직업성 피부염에 대한 지평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7) 방사선 누출사고에 의한 직업병—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직업병**

한국공업엔지니어링(주)에 근무하는 이용탁씨는 1989년 4월 26일 가스관의 용접 부위에 균열 여부를 조사하는 비파괴검사(강력한 방사선을 쬐어 시멘트 구조물이나 배관용접 부위의 내부균열을 주로 검사하는 작업)시 방사선(감마선)에 누출되는 사고를 입었다.<sup>25)</sup> 사고 이후 손가락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 병원을 전전하다가 1990년 3월에는 설사, 빈혈증이 수반되면서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한양대병원에서 방사선 피폭과

관련 있다는 진단을 받고 손가락 두 마디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회사 측과 합의하여 퇴직금·보너스와 산재보상금 200만 원 등 총 780만 원을 받았지만, 이씨는 이 방사선으로 인한 고통이 언제, 어떻게 또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놓여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방사선 사용업종과 관련한 안전시설, 치료, 보상조항이 없어 사고가 나면 회사와 개인 간의 타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프레스 절단사고에 의한 손가락 두 마디 절단 장애와 방사선에 의한 장애가 똑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는 무방비, 무대책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방사선 사용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정이다.

전남 영광 핵발전소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금강공업사에서 방한복 세척 작업을 하던 김철씨(56세, 남)도 전신무기력증, 백내장, 소변장애, 현기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부에서 방사선과 무관하다 하여 아무런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기관은 산업기관 367개, 교육연구기관 123개, 의료기관 88개, 판매·제조업체 16개나 되며 앞으로 이들 이용 기관수는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재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8) VDT 증후군**

VDT 증후군이란 VDT(컴퓨터 영상단말기)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력저하, 근육피로, 두통, 스트레스 등이 주 증상이다. 100만 대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사무자동, 운수통신망의 확대 등으로 앞으로 더더욱 보급율이 늘어날 컴퓨터는 현재 은행, 병원, 방송국 등에 근무하는 사무직 여성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앙대의대 안의학교실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전국 VDT 취급 사업장 20곳의 노동자 3,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18.2%인 612명이 각종 안과 질환, 두통, 불면증으로 병원과 약국을 찾는

25) 「한국일보」, 1990년 3월 27일자 ; 노동과 건강연구회 회보 10호.  
26) 「한겨레신문」, 1990년 8월 29일자.

것으로 드러났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VDT 증후군에 대해서 노동부는 컴퓨터가 눈과 신체에 결정적 악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키펜치 등 계속되는 동작으로 인한 근육피로 등으로 나타나는 경건완장해만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있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작업자들의 건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9) 이황화탄소중독**

전진국들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 이황화탄소중독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모두 기계화된 공정으로 처리를 하여 발견되고 있지 않은 이황화탄소중독 환자의 발생이 한국에서는 인건사 독점 제조업체인 (주)원진레이온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다. 1988년에 처음 보고되어 사회여론화된 이후 같은 해 10월 직업병 신고기간에 등록된 65명 중 직업병으로 판정된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53명이다.<sup>28)</sup>

이들 중 원인상씨(66세, 남)는<sup>29)</sup> 1963년부터 1972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으며, 김소순씨(55세, 여)는<sup>30)</sup> 1972년부터 12년 간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심한 두통,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에 시달리게 되어 10년 넘게 몸바쳐서 일해온 대가가 병과 그로 인한 고통뿐이라는 결과이다.

퇴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현직 근로자에게서도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는 계속 나타나는데 지난 1990년 8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검진 신청을 낸 12명 중 10명이 중독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8명은 5~14년 전 퇴직한 사람들과고, 2명은 1989년에 휴직을 한 노동자이다. 이로써 앞으로도 재직 근로자 16,000명, 퇴직 근로자 12,000명에게서 계속 발견될 이황화탄소중독을 회사측은 가능한 한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27) 「동아일보」, 7월 5일자.  
28) 「한겨레신문」, 6월 3일자.  
29) 「한겨레신문」, 5월 26일자.  
30) 「한겨레신문」, 2월 13일자.

하고 있다.

김봉환씨(53세, 남)는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원액 2과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병원을 전전하다 직업병으로 의심되어 검진을 받아본 결과(1990년 10월) “이황화탄소중독의증 및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회사측과 노동부에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비유해 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당하여 치료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1991년 1월 5일 사망하였다. 앞으로도 공장의 정밀감독과 기계화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는 퇴직근로자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양산될 것이다.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측의 입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

### 3. 제도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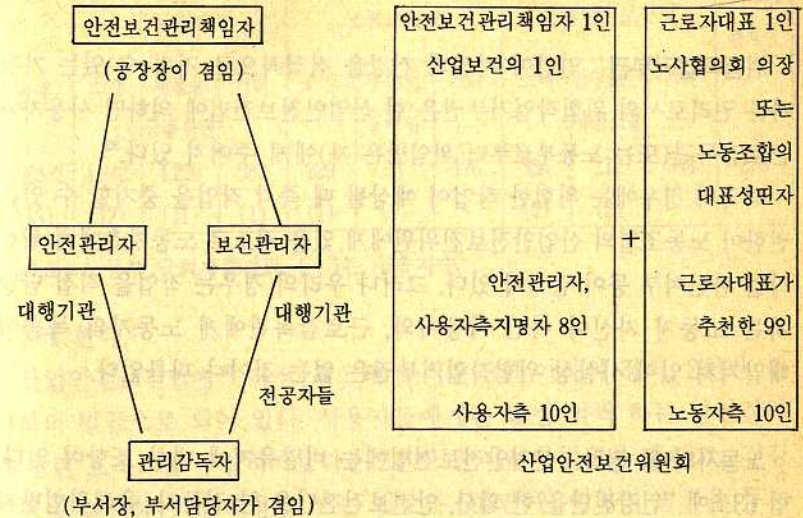
1970·80년대 노동자들의 주된 생존권적 요구가 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노동조합 탄압분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활동은 극히 부재하였다. 계속 발생하는 재해 노동자들에게는 사람값에 전혀 못미치는 보상으로 그나마 장애가 남은 노동자는 재취업의 기회가 막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1981년 제정)을 중심으로 예방과 보상, 재활 측면을 살피고자 한다.

#### 1) 예방적 측면

#####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동자의 건강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보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노동조합측(노동자 대표집단)과

사용자측의 입장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표 15〉 단위사업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 산업안전보건법 19조<sup>30)</sup>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의 동수로 구성되며 산업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단지 심의하는 기구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이에 따른 결정과 집행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지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는 거리가 먼 형식상의 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맡고 있는 안전요원들도 그들에 대한 고용·해고권이 사용자측에 있으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건강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이윤추구를 생리로 하는 사용자 사이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최종적

31) 산업안전보건법 19조 : 사업주는 사업장내 안전보건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기구로서 행세하지 못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노동자 건강권을 형식적인 수준에서 지키는 명문조항에 그치고 있다.

**위험작업거부권** 인간이 자신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권리로서의 위험작업거부권은 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감독관(또는 노동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주어져 있다.<sup>32)</sup>

외국의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이 예상될 때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있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위험작업 판단여부 등이 맡겨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작업을 직접 담당하는 노동자 자신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자의 목숨이 내맡겨져 있어 사실상 위험작업거부권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의 알 권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이 있다. 법 63조에 “건강진단을 한 의사, 안전보건진단을 한 전문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검토한 자, 유해성 조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용자들에 악용되어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검진 결과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기업비밀이 노동자의 건강보다 우선한다는 발상으로 인명의 존엄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벌칙조항** 1990년 한 해만 보아도 산업재해로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반면 사용자는 단 2명만이 구속된 사실은 정부의 산업안전활동을

32) 산업안전보건법 26조 : 사업주는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51조 :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장에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표 16〉 1990년 9월 30일 현재 입건 구속된 사업장 현황

총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노동관계법
	소계	체불등 금품관련	기타	소계	부당노동행위	기타	소계	안전보건 시설소홀	기타	
5,905건 (15)	4,842 (12)	4,259 (11)	583 (1)	229 (1)	53 (1)	176 (1)	556 (2)	212 (2)	344 (2)	278 (2)

자료 :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 )는 구속자수.

의심케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sup>33)</sup> 가장 최고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사용자들에게는 몇십 억씩 하는 안전장치가 달린 프레스를 구입하기보다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택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데 비용을 쓰는 것보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처벌조항은 계속 되풀이되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조장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가 재정을 부담하고,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들의 임명권한을 사용자가 갖고 있는 등 전반적인 체계가 사용자 관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없이 불가능하다.

1988·89년부터 산업안전에 관심을 가져온 부천 경원세기, 서울 세원, 울산 현대자동차 등 몇몇 선도적인 노동조합들에서는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노동조합 독자적으로 산업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시 노조와

33) 산업안전보건법 43조, 시행규칙99조 : 기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 실태

〈표 17〉 1989년 건강진단 결과분석

적용업체	수진근로자	질병자총수(직업성질병유소건자)	일반질병유소건율	직업성질병유소건자
77,670	3,467,135	86,459 (7,568)	2.28%	0.22%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 1990년 8월.

〈표 18〉 노동자 정기 건강진단 현황

건강진단을 실시한 총 대상업체수	1년에 한번도 안한 곳
7,915	2,787

주 : 대구지방 5인 이상 사업장 7,915군데를 대상으로 실시.

자료 : 「한겨레신문」, 1990년 4월 14일자.

합의된 기관에 의뢰하는 등 노동자들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자 발견율은 일본의 1/4에도 못미치며 특히 직업과 관련된 직업병을 발견하는 율도 0.2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실태보고에 의하면 의사가 참석하지도 않은 채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가 15~20%를 차지하며(충남대 예방의학교실, 「근로자 건강실태」보고), 검진내용도 아주 단순한 기초항목(혈압, 빈혈, 혈당, 요당, 요단백, 흉부X선, 혈청BOT, GDT, 콜레스테롤)에 불과하며 극히 형식적으로 건강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용자와 의료기관이 개별 계약관계를 맺고 검진을 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직업병이 은폐되기를 원하는 사용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검진하여 최대의 이윤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1년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35%나 차지하고 있어 질병의 사전예방은 요원한 실정이다.

〈표 19〉 1990년 5월 이후 37개 망간제조·사용업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등 결과보고서

조사 대상 사업장	실시	시정지시내용 (건수)									
		망간 건강 진단	보호구 미착용	안전 보건 교육	작업 환경 미측정	명칭 미개시	국소 배기 장치	안전 시설 미설시	안전 관계자 미선임	기타	계
38	27 미취급 업체 11	21	16	10	9	13	30	24	3	21	147

자료 :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표 20〉 염료·안료업체 작업환경 실태 확인점검 결과보고

조사 대상 사업장	점검 업체	위반 업체수	시정 지시 건수	개선 완료 건수	개 선 내 용							
					안전 상의 조치	국소 배기 시설	보건 상의 조치	유해 물질 표시	보호구	안전 보건 교육	안전 관리 체계	작업 환경 측정
57	50	49	268	268	58	55	36	33	28	19	15	11

자료 : 노동부 국회제출 자료.

(3) 작업환경측정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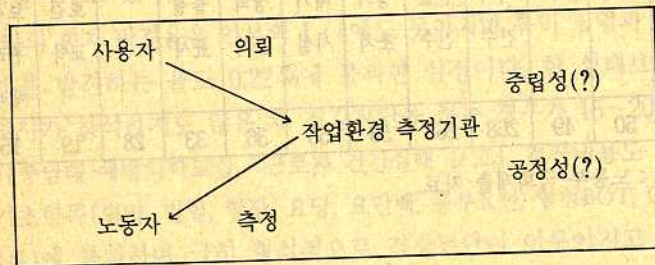
유해물질, 유해환경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는 작업환경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판단될 수 있다.

1990년 11월, 노동부의 국회제출자료에 의하면 현행 법규상 1년에 1~2회에 걸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간취급업체 중 작업환경측정조치 안하고 있는 사업장이 33%에 달하고 있으며, 염료·안료업체의 경우 50개 업체 중 49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하는 측정기관은 전국에 걸쳐 총 37개에 불과하며 이들이 조사해야 할 대상업체는 118,984개(1989년)에 이르러 환경측정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의 두번째 요인은 사용자에 의해서 검진기관의 지정, 비용지불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환경측정이 노동자들에게 유해환경, 유해인자로부터의 보호가 힘들다는 구조적 요인에도 있다.

오리엔트전자(직업병편 : 수은중독 참조)의 경우 20년 동안 단 한번도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여론화되어 환경측정을 실시한 당일에는 관리자들이 사전에 청소를 하고, 환풍기를 작동시키는 등 평상시의 작업환경과는 달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은 하루만에 끝나고, 정확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유해인자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여러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의해 폭로되고 있다.



위와 같이 노동자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측의 압력에 의해 측정기관에서 나오는 결과는 노동자의 건강보호와는 거리가 멀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으며 이 중 포항제철노동조합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회사측에만 작업환경측정을 맡기는 것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포항제철노동조합은 회사측과 합의하여 1990년 7월 서울 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뢰, 2개월 동안 작업환경을 측정하였다. 포항제철은 국내 제조업체 중 가장 선진적인 산업보건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번의 측정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500명의 표본추출 수진자 중 10%에 해당하는 50여 명의 노동자가 일산화탄소중독, 요추질환, 소음성난청 등 직업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COE(코크스오븐) 배출물질이 제2코크스 공장에서 대량 검출되었다(허용기준치 0.2mg / km<sup>3</sup>보다 4.2배~59.5배 초과).<sup>34)</sup>

이 결과는 최대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이 결과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기업측이 행한 모든 조치이다.

기업이미지 실추라는 명목으로 노조 법제산업안전부장과 홍보부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고 포철 전체 노동자들에게 측정결과를 설명하려는 노·사 공동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건강진단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노동자들에게는 조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확인서를 강요하는 등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노조탄압까지 자행하였다. 게다가 측정기관의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일간신문지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어 전문연구원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독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하였다.

결과에 대한 은폐 조작을 위한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포항제철의 보건관리자를 환경측정을 담당한 보건대학원 원장에게 보내 자신들이 징계당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사제간의 관계를 악용하여 측정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서명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번 포항제철의 사건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측정결과가 명백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또한 작업환경 측정기관도 전문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건강을

34) 「동아일보」, 1990년 12월 22일자.

위한 환경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조합)들의 힘의 밀받침이 없이는 힘든 현실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 2) 치료·보상측면

### (1) 치료받을 권리

재해를 당한 산재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마음놓고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어 이 중·삼중의 고통에 놓여져 있다.

구로동의 모전자회사에서 일했던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관절염으로 회사 지정병원에 입원했으나 입원기간이 길어지자 병원 사무장이 “별로 아픈 것 같지 않다”며 매일 병실에 들러 퇴원 압력을 가하여(노동인권회관 상담 사례) 결국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회사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 산재지정병원에서도 비슷하다. 특히 산재환자들이 회사측과 산재 인정 여부를 놓고 시비가 붙게 되면 병원측은 병원비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산재환자를 꺼리게 된다.

또한 산재를 당한 경우 작업현장 주변의 가까운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의원·병원급이어서 정확한 치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종합병원(그나마 서울대 병원은 산재 지정병원이라니어서 이용할 수 없다)으로 전원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들 종합병원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환자가 마음대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기란 아주 어렵다. 산재를 당한 환자에게는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가 나오지만, 재해를 입기 전 월급의 70% 정도의 휴업급여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특히 중상인 경우 가족까지 병원에 매이게 되어 생활고통이 뒤따른다.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치료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사 산하 산재 요양기관으로 옮기기를 권유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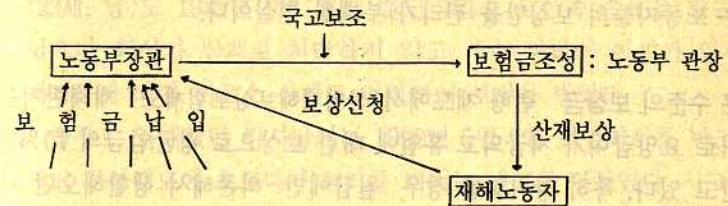
〈표 21〉 산재요양기관의 현황

중앙병원(인천)	300병상
동해병원(강원 동해)	270병상
장성병원(강원 태백)	380병상
창원병원(경남 창원)	200병상
순천병원(전남 순천)	200병상
반원병원(경기 반월)	100병상
산업재활원(인천)	300병상
정선병원(강원 정선)	150병상
화성요양원(경기 화성군)	150병상
대전재활병원 건축중	300병상

자료 :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환자들을 위한(산재환자만을 위한) 요양기관도 병원 10개, 총병상 2,400개로 산재왕국이라는 명예(?)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표 21 참조).

### (2) 보상받을 권리



보상에 대한 권리가 나타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노동력의 손실로 인한 자본축적의 압박을 국가가 개입하여

완화시킨다”는 측면으로 개별사업주들이 노동부에 보험료를 내면,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노동부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요양보상, 휴업보상, 재해보상, 유족보상). 이 법은 보험사업자인 국가(노동부)가 보험가입자이며 보험료 납입자인 동시에 피보험자이기도 한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강제적용범위의 문제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낮은 보상수준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의 보상권** 현행법에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농업·임업 종사자들에게는 재해보상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상권은 제도적으로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1990년 5월 운수동 지하창고에서 산소용접기로 철물 절단작업을 하던 우원화씨(34세, 남)가 과열된 드럼통이 폭발하여 중화상을 입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였다.<sup>35)</sup>

이에 유족들은(산재 강제적용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영세한 사업주 또한 그동안의 치료비 지출 등으로 돈이 없어 사업주 유가족 양쪽 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프레스공 박선동씨(21세, 남)<sup>36)</sup>도 1989년 3월 프레스작업중 왼손 둘째 손가락을 잘린 뒤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관계로 100만 원에 합의하는 등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상받을 권리가 부재한 현실이다.

**낮은 수준의 보상금** 현행 제도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해환자는 치료비로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휴업에 대한 보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다. 특히 장기화될 경우 월급에만 의존해서 생활해오던 가

족들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월급의 70%밖에 안되는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고통도 뒤따르게 된다. 산업전사로 몸바친 결과는 고작 장애가 된 몸뚱아리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생활고이다. 장애가 남은 산재환자들의 장애등급과 이에 따른 보상금은 더더욱 낮아 이후 생활대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밀링머신에 손을 다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문모씨(22세, 남)가 11급 판정으로 받은 보상금은 220만 원에 불과했다(평균임금×220일분).<sup>37)</sup>

운수 정비일을 하던 정비공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sup>38)</sup>, 보상기준으로 보면 8급(평균임금×560일분)이었다. 이 노동자의 임금을 13,000원으로 계산해보면 보상액은 74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단칸 전세방 하나도 얻기 힘든 액수이다.

장애등급에 의한 보상기준은 실명, 하반신 마비 등이 1등급으로 1,340일분의 보상금을 받는데, 이는 1,880만 원(일당 14,000원인 경우)에 불과한 낮은 액수이다.

이는 산업재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산재 빈발업체가 되면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가능한 한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측의 태도와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대한 법규정과 이를 해석하는 차이에서 오는 법규범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명백한 산업재해임에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측의 태도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때에만 산재로 처리될 수 있다. 서울 태서전기에 근무했던 이근철씨(23세, 남)도 1989년 9월 철판 절단작업중 오른쪽 손목을 잃는 사고가 났으나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버티어 이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자 비로소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을 받았다.

광부로 일해왔던 강사남씨는 1990년 5월 7일 작업지시를 받고 동발을 지고 경사궤도에 오르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후 회사

35) 「한겨레신문」, 1990년 6월 21일자.

36) 「한겨레신문」, 1990년 6월 21일자.

37) 「동아일보」, 1990년 7월 12일자.

38) 노동인권회관 상담사례.

측은 목격자가 없어 작업중 재해인지 알 수 없으니 산재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강씨는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그 결과 6월 2일 재해 인정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회사지정병원에서 엑스레이로 진단해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부 산재인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에 강씨는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특수 엑스레이 검진을 받아 “추가 판 탈출중 요추 4.5번”이라는 진단으로 사고 3개월 만에 겨우 산재환자로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병치료에 대한 불안·생활고통 등을 비판하여 “돈 없고 뺨없는 자는 죽어야 하며 있는 자만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 너무나 불평합니다”라는 글귀를 일기장에 남긴 채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다.<sup>39)</sup>

이같은 낮은 보상기준뿐 아니라 노동부에서 내리는 장애등급 판정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 노동자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전자제품 알루미늄케이스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김광태씨(32세, 남)는 선천성 척추장애자로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7년 전에는 프레스에 눌러 왼쪽 검지손가락을 절단당한 바 있다. 그러던 중 1987년 12월 8일 프레스 작업을 하다 왼쪽 3, 4, 5번 손가락 3개가 프레스에 눌러 부상을 당해 결국 김씨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 부상에 대해서 노동부는 손가락 3개 부상이라는 산재 14등급 판정을 내려 앞으로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7년 전 장애에 덧붙여 가중장애로 최소한 9등급 판정까지는 받을 수 있고, 척추 장애자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력 상실 판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잘못된 판정을 내린 경우이다.<sup>40)</sup>

39) 「한겨레신문」, 1990년 8월 28일자.

40) 「전국노동자신문」, 1990년 3월 2일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재해 또는 선천성을 불문하고 손가락의 장애가 있는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같은 손가락의 장애가 가중되거나 같은 손의 손가

〈표 22〉 행정소송 제기현황(1989. 11~1990. 10)

유형별	건수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요양불승인 처분	27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17
장애등급 결정	10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1

자료 :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업무상 재해 인정을 둘러싼 불안정한 보상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제보상을 받게 되는 산업재해는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항상 시비가 있어왔다. 〈표 22〉에서와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유형 중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과 요양불승인 처분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측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운 산재 인정 시비로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것과 더불어 노동부가 직업병 판정에 인색하여 많은 노동자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1989년에 유해사업장에 종사하는 476,940명의 노동자들 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7,602명에게 직업병 판정을 내렸는데, 이들 중 노동부에서 인정받은 환자수는 1,295명으로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sup>41)</sup>

또한 아남산업 반도체 공장에서 정비일을 하던 최익현씨(28세, 남)는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목과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채 일을 계속하던 중 통증과 함께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 ‘경추염좌로 인한 사경증’으로 진단이 나왔다. 이 병에 대해서 회사측은 다른 작업자들은 이상이 없는데 혼자만 그렇다며 산재요양 신청을 거부하였고, 노동부에서도 “희귀한 질병이고 직업성인지 재해성인지 불분명하다” “산재 등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락에 기능장애를 입는 경우 가중장애로 취급해야 한다.

41) 「조선일보」, 1990년 7월 14일자.

산재 인정을 한달 동안 거부하였다.<sup>42)</sup> 구로공단 내 목모양(22세, 여)은 '섬유분진으로 인한 중증폐결핵' 진단을 받아 노동부에 산재요양 신청을 냈으나 "폐결핵이 작업환경 때문에 발병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sup>43)</sup>

1977년에 원진레이온에 입사하여 몸이 나빠져 1983년에 퇴사한 김봉환씨(53세, 남)는 퇴사 이후 이황화탄소중독 증세로 고생을 하다가 1990년 11월 병원에서 이황화탄소중독의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김씨가 일했던 부서가 유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서(원진레이온은 어느 부서나 위험요소가 있으며, 비유해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노동자도 이황화탄소중독 판정을 받은 사례있음) 산재 인정을 거부하였고 노동부도 회사측을 두둔하며 산재요양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sup>44)</sup>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부는 직업병으로 판정되었을 때의 사회적인 영향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고 회사측의 입장에 서서 산재 판정을 해나가고 있다.

산재 인정에 대한 시비는 업무와 관련시켜 산재로 인정하는 포괄적인 해석이 아니라 명문조항에 매달려 해석하는(산재 법정주의) 경우가 많아 서 재해 인정기준은 앞으로 더욱 넓혀져야 하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시의 사고,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 디스크와 같은 업무상 질병인지 일반 질병인지 가리기 까다로운 영역 등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시비가 늘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보상금 구로공단 소재 오리엔트전자는 수은중독 직업병 판정에도 불구하고 3~4개월이 지나도록 해당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sup>45)</sup>, 삼척탄좌 막장에서 일하던 남중혁씨도 4개월

42) 「한겨레신문」, 1990년 4월 10일자.

43) 「국민일보」, 1990년 6월 7일자.

44) 원진레이온 직업병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맥지.

45) 「한겨레신문」, 1990년 11월 6일자.

째 산재로 입원치료받고 있으나 휴업급여를 한번도 받지 못하는<sup>46)</sup> 등 제반 보상의 늦장 처리가 환자들을 생존의 고통으로 몰고 있다.

특히 장기 요양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노동부가 요양승인을 거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중지되고 휴업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엄용선씨(23세, 남)의 경우 요추염좌, 우측부 중골골절, 슈어만씨 병의 증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데도 1990년 8월부터 요양승인이 거부되었고, 백도선씨(35세, 남)의 경우 오른쪽 어깨부터 손끝까지 신경이 마비되었다가 느린 속도로 팔뚝까지 신경이 살아나고 있는데 9월 5일부터 요양이 거부되었다. 울산 효성금속에서 일하던 김찬수씨(42세, 남)<sup>47)</sup>의 경우도 1988년 11월 동료직원의 크레인운전 미숙으로 허리를 다친 이후 입원·통원치료를 받던 중 1990년 8월 20일 노동부로부터 치료중결통지를 받았고 회사로부터는 해고되는 등 장기 재해환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울산 산업재해협의회에 의하면 3/4분기에 노동부 부산사무소에서 울산사무소에 울산지역 장기 산재환자 중 치료중결 대상자 40명의 명단을 보내 치료 중지시킴).

〈표 23〉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구 분	개정 주요내용	처리지침
가. 원인불명의 재해인정요건완화(제3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한 재해의 원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해, 순수한 사적 행위 등으로 발생한 증거가 없으면 업무상으로 인정</li> <li>• 재해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불명한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한 재해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축소 해석하거나 발생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보완 등에 따른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3조 제4</li> </ul>

46) 「한국일보」, 1990년 3월 27일자.

47)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보.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

항에 의거 처리

<사례>

①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부상한 경우 부상원인이 불명하지만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 행위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으로 인정

② 작업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진단결과 약물중독(습관성 약품복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의 재해

③ 현장에서 물건을 옮기다 넘어져 무릎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나 병원 진단결과 류마치성 관절염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의 재해

• 사업주가 시설물을 제공하고 그 시설물의 합리적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으로 처리  
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 제3항에 의거 처리

<사례>

① 휴식시간에 농구시설이 되어 있는 농구장에서 동료들과 농구 경기를 하던 중 부상한 경우는 업무상으로 인정

② 점심 시간에 농구시설이 되어

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 인정 범위 확대(제6조 제2항)

•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 시설을 이용한 휴게·휴식시간, 작업개시 전 작업준비, 작업종료 후 퇴근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으로 인정

• 노무관리상 인정되는 휴게·휴식시간, 작업개시 전 작업준비를 하거나, 작업종료 후 퇴근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용무를 사업장에서 하지 않도록 제6조, 제7조 삭제

있지 않은 옥상에서 농구경기를 하던 중 부상한 경우는 업무의 재해

③ 점심시간에 차량의 왕복이 빈번한 도로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운행중인 화물차량에 의해 부상한 경우 업무의 재해

④ 일과후 또는 공휴일에 기숙사에 있는 동료들 간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를 편성, 축구시합등의 재해는 업무의 재해

• 일반적인 판단은 제9조 제1항에 의하되

• 기초, 기존질환 유무에 따른 판단시는 제9조 제2항에 의하고

• 취업시간외 또는 사업장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에 의거 처리

<사례>

① 기초, 기존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자가 작업중 뇌졸중(지주막하출혈)으로 사망시 업무상으로 인정

② 만성간질환을 가진 자가 회사내 식당에서 식사중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의 재해

③ 당뇨병을 가진 자가 근무중

다. 중추신경 및 순환기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의 현실화(제9조 및 제16조)

• 기초,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초,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 중악하면 업무의 질병이나 뇌졸중(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출혈)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중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제16조 삭제)

• 취업시간외 또는 작업장 밖에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p>라. 업무와 관련 있는 새로운 직업성 질병의 수용</p>	<p>• 특수한 작업상태하에서 반복적 지속적 작업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직업성 질병의 발생시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p>	<p>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단순히 당뇨병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외로 처리</p> <p>• 새로운 직업성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는 가능한 자문, 의사 등의 의학적 소견과 사례, 그리고 「직업병 판정심의위원회」 판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p> <p>&lt;사례&gt;</p> <p>① 안내양 없는 자율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오른쪽 어깨를 지나치게 사용하여 생긴 오른쪽 어깨의 통증(우경부신경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p> <p>② 타자수가 장기간 타자를 칠 경우 목, 어깨, 팔 등이 결리고 통증과 함께 감각마비가 오는 경견완증후 일명 키핀치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p>
------------------------------------	--	--

### 3) 재활 측면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거의 없이 낮은 수준의 보상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재해의 현실은 재활에 대한 측면에서는 법률, 시설, 방침 등이 완전히 전무한 상태이다.

왼쪽 손가락 4개를 절단당한 임종무씨는 회사측에 복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정식 퇴사 후 신입사원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여 사실상의 채용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박용주씨는 프레스 기계에 왼손이 절단되어 남은 한 손으로 가능한 일을 찾아 이력서를 12군데나 넣었지만 혐오감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sup>48)</sup> 사람을 상품가치로 인정하는 자본가들의 생리상 산재노동자는 활용가치가 적고, 이윤을 빼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고용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산재 노동자들 대부분은 신문배달, 우유배달, 노점상, 주유소, 세탁소 등으로, 혹은 길거리의 걸인으로 내몰리게 되며, 혹 받아주는 공장이 있더라도 아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산업재해로 장애가 된 노동자들을 위한 재활시설로는 인천산업재활원(300명 규모)과 반월 재활작업소 두 곳뿐이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재해로 장애자가 된 노동자의 고용대책에 관한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재활시설의 확충을 위해 대전산업재활원(1991년 9월)과 광주재활작업소(1992년 개소예정)를 건립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용의무제도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재활시설의 확충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며, 법으로 고용을 의무화한다 하여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무용한 방침일 뿐이다. 이보다 산재의 심각성에 대한 기업주와 전국민의 인식과 이의 추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 산재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4) 산업재해 관련법 개정

1990년에 발표되었던 산업재해 관련법 개정을 보면 정부의 산재방지를

48) 「세계 장애인신문」, 1990년 6월 7일자.



위한 정책이 여전히 보상부분에 머무르고 있고, 오히려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이 아니라 기업가를 위한 법개정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①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인 이내의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1990년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
- ② 유해 위험작업의 범위를 1종으로 축소하여 잠수·잠함작업만 인정한다(1990년 7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 ① 진폐보상 직종을 연탄공장, 도자기 제조업체 등 일반산업 노동자들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다(1990년 4월 11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1991년부터 시행.
- ② 진폐등급을 현행 11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하여 초기증세 환자에게도 혜택이 가능하도록 한다(1990년 7월 23일자 「매일경제신문」 보도). 1991년부터 시행.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업종의 확대 : 농업, 임업, 부동산업, 금융, 보험 등 총 115만 명에 혜택이 가능하도록 한다(1990년 7월 23일 「매일경제신문」 보도).
- ④ 산재보험 확대 백지화 : 금융·보험업의 반대에 부딪쳐 금융·보험업종을 제외한 시행령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함(1990년 12월).

보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산업의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넓혀져 가고 있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 보험재원의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주만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재정보조가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개정 중 유해 위험작업 범위축소는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이 개정안에 의해 유해 위험작업에서 일해오던 노동자들은 좀더 많은 시간 동안 유해한 인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기존 법안	개정안
근로기준법 43조—지하작업,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유해 위험한 작업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43조 삭제.
시행령 26조 : 유해·위험작업의 범위	시행령 26조 삭제.
1. 고열 물체 취급작업~ 2. 저온 물체 취급작업~ 3. 라듐방사선, 엑스선 취급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제한되는 작업은 작업의 성격상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작업으로서 잠함작업, 잠수작업 등 고기압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 · · ·	〈1종만으로 대폭 축소〉
9. 납, 수은, 크롬, 비소~.	이 조항으로 6시간 근무시, 유해인자,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짐. 별도의 수당 지급을 요구할 근거를 잃게 됨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작업	



## 제 1 장

# 여성노동자의 문제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1990년에도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배치 등 고용의 전과정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였다.

그리하여 남녀노동자의 월평균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실제 액수 면에서는 격차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직급과 임금체계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차별임금의 구조는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차별실태 중 임금과 직급체계만을 살펴본다.

1990년에는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섬유, 봉제, 전자업종 등에서 라인축소 휴폐업이 속출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의 실업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임시, 용역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고용문제는 여성노동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탁아소설치 등 모성보호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각 지역과 공장에 탁아소

를 설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990년 12월 국회에서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성계로부터 국가의 책임과 의지가 희박하며 월소득 4만 8천 원 미만의 법정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한 것, 지원은 적고 간접·규제가 많아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법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러한 탁아소 문제와 함께 모성보호 문제는 심각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이 보호되지 않고 여성노동자는 각종 질병과 직업병에 방치되어 있다.

### 1. 여성노동자의 차별실태

#### 1) 임금차별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의 특징은 직종간(생산직—사무직), 학력간(저학력—고학력), 업종간(경공업—중공업), 기업간(중소기업—대기업) 그리고 남녀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는 능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고 생산노동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운영방식이 노동자의 저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남성과 마찬가지로의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라 할지라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계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상반기 현재 전직종의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의 53.4%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생산직 여성노동자는 생산직 남성노동자의 54.4%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1988년 51.4, 1989년 52.7, 1990년 53.4로 꾸준히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액수를 보면 1985년 20만 7,420원에서 1990년 상반기에는 32만 3,985원으로 해마다 격차가 커지고 있다.

〈표 1〉 연도별 남녀간 임금격차 추이

(전산업 기준, 단위: 원)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상반기
전 직 종	남 성	397,265	426,871	467,286	534,658	639,578	695,400
	여 성	189,845	208,914	234,071	274,832	336,875	371,415
	임금격차	207,420	217,957	233,215	259,826	302,703	323,985
	격차지수	47.8	48.9	50.1	51.4	52.7	53.4
생 산 직	남 성	292,595	320,429	356,253	430,819	541,257	595,975
	여 성	155,482	175,373	201,280	242,379	298,468	324,193
	임금격차	137,113	145,056	154,973	188,440	242,789	271,782
	격차지수	53.1	54.7	56.5	56.3	55.1	54.4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 각호.

1) 상여금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기준임.

2) '임금격차'는 남자임금에서 여자임금을 뺀 것이고, '격차지수'는 남자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자임금을 말함.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아시아의 대만, 태국 등과 비교하여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989년 현재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2.8인 반면 일본은 60.5, 대만은 64.5, 태국은 66.2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서 여성노동자의 차별임금 실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주 구체적인 조사의 내용을 보면, 사무직 금융기관의 경우도 같은

〈표 2〉 각국의 성별 임금구조

(남자=100)

	한국		일본	대만	태국
	1980	1989	1988	1988	1987
남 자	100.0	100.0	100.0	100.0	100.0
여 자	42.9	52.8	60.5	64.5	66.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연구」, 1990.

〈표 3〉 성·직종·연령별 임금격차(비농전산업 1990. 1)

		(단위: 천원, %)						
임금수준	나이	19 이하	20~24	25~29	30~39	40~49	50~59	총평균
남 자	전문기술직	228	307	434	601	772	869	535.1
	관리사무직	289	331	427	591	749	718	517.5
	판매서비스	220	290	387	469	457	347	361.6
	생산직	205	262	324	386	421	394	332
여 자	전문기술직	236	325	428	602	699	775	510.8
	관리사무직	238	274	355	454	447	413	363.5
	판매서비스	236	264	330	324	267	251	278.6
	생산직	182	219	235	220	217	212	214.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91 임금관련통계자료집』.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녀간 임금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경우 대졸여사원과 대졸남사원의 초임 본봉 차이가 2만 8,200원이던 것이 5년 뒤에는 5만 2,000원, 10년 뒤에는 7만 4,500원이 되었다. 고졸여사원과 고졸남사원의 초임 본봉 차이도 5천 원에서 5년 뒤에는 2만 7천 원, 10년 뒤에는 4만 5,900원으로 벌어졌다.”

직종별 임금격차를 보면, 전문기술직에 비해 관리사무직, 생산직의 남녀간 임금격차가 크며, 가장 저임금을 받고 있는 생산직여성의 경우는 전문기술직여성의 41.9%의 수준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격차는 점점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 4〉를 보면, 여성노동자의 취업 자체가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종 등 주로 저임금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저임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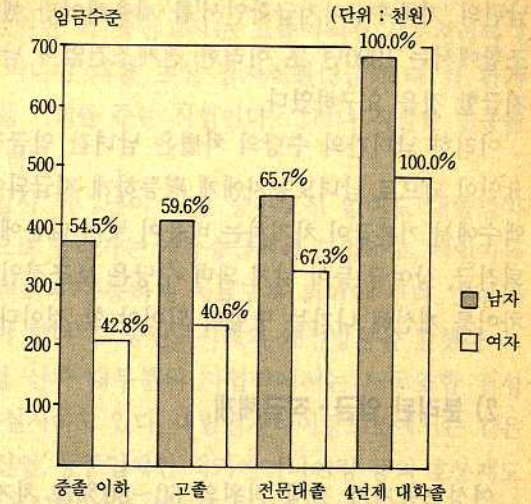
이러한 임금구조는 곧바로 학력별 격차로 이어져 〈표 5〉에서와 같이

〈표 4〉 여성 노동자의 직종별 분포

	직종내 여성비(%)
전문기술직	22.8
행정관리직	1.3
사무직	34.7
판매직	51.4
서비스직	37.9
생산직	40.0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 인구연보』, 1988.

〈표 5〉 학력별 임금수준 비교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1989.

4년제 대졸여성을 100으로 할 때, 고졸 40.6, 중졸 이하 42.8의 수준이며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이 격차는 심해진다.

수당의 경우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데, 몇년 전부터 가족부양비 보조 명목으로 남성노동자에게 주로 주어지고 있는 ‘가족수당’을 여성노동자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여성노동자들도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고, 1989년 말 개정된 가족법에서도 부부공동 생활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이후로 가족수당을 남녀노동자 모두가 받고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삼성제약노동조합은 배우자수당 1만 원, 자녀수당 1만 원을 남녀 구분없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수당 규정을 1990년 단체협약에 포함시켰다. 인천 코스모스전자의 경우도 1989년부터 남녀노동자 모두 배우자, 부모, 자녀 각 1인에 한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1) 한국여성개발원, 『57개 금융기관 임금실태조사』, 1990년 봄호.

은행의 경우에는 여직원이 가족수당을 요구할 경우 남직원과는 달리 남편의 '가족수당미지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래서 각 은행 노동조합에서는 1990년 초 이러한 전제조건없이 남녀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남녀간의 수당의 차별은 남녀간 임금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한 요인이 되므로 남녀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임금 액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본급에 의해 산정되는 퇴직금, 상여금 등이 낮게 되며 수당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본급의 차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분리된 임금·직급체계

여성노동자가 전체 직원의 60~80%를 차지하는 보험회사, 증권사, 제2금융권, 은행 등에서 고졸여직원의 직급과 임금차별문제는 심각하다.

은행의 경우 고졸남자는 처음부터 '행원'으로 출발하지만 고졸여자는 '여행원'으로 시작해 5년이 지난 뒤 행원시험을 거쳐 '행원'이 될 뿐만 아니라 호봉도 남자와 차이가 난다. 제2금융권,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고졸여직원들은 입사 때부터 남자보다 낮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남자와 같은 직급이 되려면 전직고시를 치른다. 그러나 전직고시는 "본인의 지원과 회사의 필요에 의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어 극히 한정된 인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1990년 9월 28일, 대한생명보험(주) 여직원 33명이 남자보다 한 단계 낮은 여직원의 직급체계에 항의해 승진고시에서 백지답안지를 내자 회사측에서는 다음날인 9월 29일 김화연씨(26세)를 "승진고시 거부 선동주도 및 질서문란"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생명보험 서무경리직원으로 입사, 8년째 근무해 온 김화연씨는 1987년 노조 초대 부위원장을 지냈고 해고 전까지 용산국 대의원으로 민주노조추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왔다.

회사측은 10월 6일 백지답안지를 냈던 남은 32명에게는 "그 사람의

선동으로 백지답안지를 냈다"는 문구의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모두 자술서를 썼다.<sup>2)</sup>

백지답안지사건을 일으켰던 이 승진고시는 고졸여직원(서무경리직 4급 을)이 입사 뒤 7년이 지나면 대졸 초임 남자직원(3급)보다 한 단계 낮은 "3급 을Ⅱ"로 올라갈 기회를 주는 시험이다. 그러나 직급만 변동될 뿐 직위나 임금과는 무관하다.

해고된 김화연씨는 "입사 뒤 7년이 되면 승진고시 없이도 대졸남자 신입사원과 동등한 직급으로 올라가는 자동승급제를 도입하고, 책임자급 시험인 대리시험을 남자직원과 동등하게 치르도록 되어야 한다. 호봉과 임금도 단일체제로 고쳐야 한다"고 승진고시제의 개선방향을 말했다.

현재 언론노동조합연맹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이후 단일호봉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대림엔지니어링노조에서는 같은 계열사인 서울증권, 대림산업, 동종업체인 럭키엔지니어링 등의 호봉제도를 비교분석하여 1989년 남녀분리호봉 철폐를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리하여 직제를 개편하였으나 아직도 남녀가 1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기타 상공회의소노동조합, 성균관대노동조합 등 많은 사무직노조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직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2.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989년 이후 산업구조조정과 노조탄압에 따른 여성사업장에서의 감원, 휴폐업, 자본철수 등으로 여성노동자, 특히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산업예비군화와 서비스산업으로의 고용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단순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불안정 고용형태인 임시고용이 증가하고

2) 「한겨레신문」, 1990년 10월 14일자.

〈표 6〉 성별 근로자종류별 상용근로자 추이(비농전산업)(단위: 천명, %)

	1988	1989	1989		1990		
			3/4	4/4	1/4	2/4	3/4
남 자	2,224 (2.1)	2,225 (0.1)	2,225 (0.0)	2,218 (-0.3)	2,220 (-0.5)	2,205 (-1.0)	2,200 (-1.2)
여 자	1,142 (-0.9)	1,078 (-5.6)	1,068 (-6.0)	1,044 (-6.5)	1,041 (-6.5)	1,020 (-6.2)	1,009 (-6.1)
전 체	3,366 (1.1)	3,303 (-1.9)	3,293 (-2.0)	3,262 (-2.4)	3,261 (-2.5)	3,224 (-2.7)	3,209 (-2.8)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 근로자종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에서만 구분되고 다른 산업에서는 관리·사무·기술직으로만 분류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에서 작성

있으며, 이러한 노동형태에 적합한 주부들이 값싼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고용되고 있다.

### 1) 여성노동자의 고용 감소

최근 몇년 사이에 한국의 고용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비농전산업의 상용근로자는 1988년 3,366명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이후 1989년에는 3,303명으로 1.9% 감소하였고, 1990년 7~8월 들어서는 2,309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중 여성노동자는 1989년 들어 급속한 감소추세에 있는데 〈표 6〉을 보면 1988년 1,142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0.9% 감소하였으나, 1989년에는 1,078명으로 5.6% 감소하였고 1990년 7~8월에는 1,009명으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1988년 753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2.6% 감소하였으나 1989년에는 680명으로 9.7% 감소하였고 1990년 7~8월에는 599명으로 11.3%나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또한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문제가 가장 심하게 나빠지고 있음을

〈표 7〉 성별 근로자종류별 상용근로자 추이(비농전산업)

	1988	1989	1989		1990		
			3/4	4/4	1/4	2/4	3/4
생산직남자	957 (0.1)	922 (-3.6)	918 (-3.6)	908 (-4.1)	895 (-4.8)	871 (-5.8)	861 (-6.4)
생산직여자	753 (-2.6)	680 (-9.7)	670 (-10.2)	646 (-10.6)	637 (-10.9)	611 (-11.2)	599 (-11.3)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 근로자종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에서만 구분되고 다른 산업에서는 관리·사무·기술직으로만 분류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에서 작성.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악화와 더불어 서비스직은 1989년 3/4분기 이후 급격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 3/4분기는 전년에 비해 7.0% 증가한 2,025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실업률도 1990년 3/4분기에 426명으로 2.2%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7천 명이 증가했다.<sup>3)</sup>

여성노동자의 고용은 주로 섬유, 전자,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첨단산업을 유력한 산업으로 지향하면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 섬유, 신발 등에서의 자동화 및 고부가가치화와 의류, 완구 등 한계산업의 업종전환, 해외이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사업장에서 휴폐업, 라인축소, 자연감원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여성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서도 노동력이 더 싼 곳으로의 자본철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무직에서도 사무자동화로 말미암아 사무직여성의 감원과 임시직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른 휴폐업사업체와 실직노동자의 현황을 보면, 1989년에는 1,443개 업체에 57,184명인 반면 1990년 상반기에만도 1,390개

3) 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0년 4/4분기

〈표 8〉 산업별 여성취업자

(1990년 6월, 천명, %)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SOC 및 기타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업	기타	
7,747	1,871	2,066	2,058	3,810	147	2,087	1,127	450
(100)	(24.2)	(26.6)	(26.6)	(49.2)	(1.9)	(26.9)	(14.5)	(5.8)

자료 : 노동부 국정감사, 1990년 11월.

업체에 38,545명에 이른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로 인해 1989~90년 사이에 휴폐업한 경우는 16개 업체에 4,74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휴폐업과 자본철수는 경공업의 여성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인지역과 마산, 부산, 대구 등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1989년 한해 동안에도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1만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감원, 해고되었다.

자연감원, 라인축소는 창원지역의 (주)통일, 대림통상 등과 같이 남성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주로 여성사업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와 「서울노동운동단체협의회」가 1990년 12월 조사, 발표한 “서울지역 고용문제의 현황과 대응”에 따르면, 총 40개 업체 중 중원전자·AMK 등 자연감원 29개 업체, 남성전기·세진전자 등 외주처리 28개 업체, 한국광학·아남정밀·영진과일직물 등 15개 업체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사업장이다.

이렇게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보다 열악한 영세하청기업으로 여성이 몰리고 있으며, 상당수의 여성들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0년 6월 현재 여성취업자의 49.2%가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이 여성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실업보험제

〈표 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1988	1989	1989		1990		
			3/4	4/4	1/4	2/4	3/4
임금근로자	9,087 (5.3)	9,812 (8.0)	9,968 (9.7)	10,024 (7.9)	9,906 (5.9)	10,379 (4.8)	10,476 (5.1)
상 시 고	7,771 (6.2)	8,270 (6.4)	8,325 (7.5)	8,386 (5.1)	8,469 (4.3)	8,656 (4.9)	8,769 (5.3)
일 고	1,316 (0.2)	1,542 (17.2)	1,643 (22.9)	1,638 (25.3)	1,436 (15.9)	1,723 (4.4)	1,707 (3.9)
비 임 금 근 로 자	4,130 (4.5)	4,073 (3.2)	4,062 (-1.9)	4,102 (-3.8)	4,041 (-0.3)	4,210 (3.3)	4,230 (4.1)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자료 : 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0년 4/4분기.

도의 도입, 부당휴폐업 및 해고제한에 관한 특별입법의 제정, 외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 강화, 직업훈련, 기술교육 강화를 제도적 법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여성노동자의 고용 악화

업종전환, 외자기업 철수, 하청으로의 분산화와 더불어 임시직의 증가, 시간제 근무제의 도입은 고용불안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표 9〉에서 임시직 노동자의 증가추세를 보면, 1988년 1,316명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하였고, 1989년에는 1,542명으로 17.2% 증가하였다.

1990년 현재 임금근로자 중 일고의 비율은 여자 22.0%, 남자 12.8%로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임시직의 증가는 남성노동자를 대체하며 단순업무 여성노동자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의 구조가 변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단순노동의 증가를 반영하며, 아울러 최근의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탄압 및 기피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임시직의 증가는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는 것이다.

임시직 노동자는 일당제노동, 시간제노동, 용역 및 개별노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일당제노동

서울 구로공단에 위치한 농산업에서는 기혼여성 노동자들을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일당은 1만 원이며 수당이나 상여금은 없고 임금은 1주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

부천의 기름향도 일당 1만 원으로 기혼여성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sup>4)</sup>

은행의 경우도 아직 대규모화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퇴직여행원들을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몇몇 은행에서는 본점 건물 내에 아예 퇴직직원들을 연결해 주는 사무실이 있어 인사부의 요청에 따라 임시직 업무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K은행의 경우 1990년 7월 현재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퇴직여행원의 수는 60여 명이다. 지점에서 임시직 여행원이 하는 일은 주로 단순작업이면서 업무량이 많은 국고부분이다.

은행으로서는 정식직원을 고용하면 연봉 1천만 원이 들 것을 임시직원을 쓰면 300만 원 정도로 해결되고 평균경력 7~8년인 퇴직여행원이므로 일 또한 정식직원 못지 않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퇴직여행원이 재취업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임금의 하락, 고용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있다.<sup>5)</sup>

### (2) 시간제노동

호텔 롯데에서는 객실관리부에 시간제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다.

4) 한국여성노동자회, 『일하는 여성』, 1990년 가을호.

5) 여성민우회, 『사무직여성』, 1990년 봄호.

고용조건은 1일 4시간 근무에 월 16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로 기혼여성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4시간이 아니라 하루 평균 8~10시간씩 일하기 일쑤이며, 이 경우 방 한 개당 1천 원씩만을 추가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식직원과 달리 월차, 연차, 생리휴가,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임금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직이라는 변칙고용을 채택하고 더구나 계약과 다른 근무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산본에서는 1987년부터 시간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35세 이하, 고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며 임금은 시간당 1,100원, 야간작업, 특근 때에는 시간당 1,500원이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정해진 바 없으며, 특별상여금이라 하여 정사원보다 적은 상여금을 받고 퇴직금은 없다. 그리하여 총급여액은 정규노동자의 60%선이다.

### (3) 용역 및 개별노동

필요한 인력을 몽땅 용역회사에 의뢰 고용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유나이티드에어라인의 경우 한국지부에 필요한 인력 2백여 명 모두 반도 용역을 통해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노스웨스트라인도 지난 1987년 노조의 파업 이후 여객부직원 1백여 명을 모두 아시아나항공사의 용역을 통해 고용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우도 1988년부터 고객카드 등을 입력하는 키편치 여사원을 전문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sup>6)</sup>

특히 전산업의 경우에는 용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양, ICR 등의 용역회사는 사무실에 책상과 전화기만을 두고 노동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화로 일을 시키며 관리하고 있다.

일의 시스템은 용역회사가 일을 맡아오면 전화로 개인에게 연락한다 → 개인은 집에 받아다 작업을 하고 디스켓을 용역회사에 갖다주고 돈을

6) 『조선일보』, 1990년 8월 23일자.

받아온다→용역회사는 의뢰한 곳에 디스켓을 보낸다는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약 4~5백 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여성이며 특히 기혼이 많다.

최근에는 전산학원에서 많은 여성들이 배출됨에 따라 단가가 현저히 떨어지며 회사가 대여해 주던 컴퓨터와 디스켓을 자신이 구입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임시직 노동자는 항상 해고의 불안 속에서 일하면서 그 자리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며 스스로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노동강도는 강화되어간다.

임시직 노동자의 증가는 상근노동자들에게 위협수단이 되어 전반적인 저임금의 유지 및 노동강도와 통제가 강화되고 노동자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임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직 노동자의 증가는 조합원수의 감소와 노조 조직력의 약화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부 노동만을 담당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되어가는 것이다.

### 3) 기혼여성 노동자의 증가

임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와 맞물려 기혼여성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매년 10%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노동부의 「여성의 연령계층별 취업실태」를 보면, 특히 1990년 6월 현재 25~34세의 계층이 186% 상승했고, 55세 이상의 고령 여성노동자도 216% 증가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 노동자는 47만 명으로 전체 여성노동자 157만 명의 30%에 해당하는데, 이는 1980년 14.5%, 1985년 20.7%, 1987년 25.5%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sup>7)</sup>

사용자들이 기혼여성을 고용하는 이유는 가계를 꾸려 나가기 때문에

〈표 10〉 여성의 연령계층별 취업상태

(단위 : 천명, %)

연령	연도		1989		1990. 6
	1980	1985		1989. 6	
계	5,221 (100)	5,883 (112)	7,126 (136)	7,595	7,747 (148)
15~24세	1,465 (100)	1,322 (90)	1,480 (101)	1,530	1,595 (109)
25~34세	964 (100)	1,349 (140)	1,752 (182)	1,841	1,792 (186)
35~44세	1,238 (100)	1,330 (107)	1,536 (154)	1,603	1,691 (137)
45~54세	997 (100)	1,133 (114)	1,381 (139)	1,489	1,468 (147)
55세 이상	557 (100)	699 (125)	977 (175)	1,132	1,201 (216)

( )는 증가비율

자료 : 노동부 국정감사, 1990년 11월.

불만없이 열심히 일하며, 전·이직의 우려가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휴일 근무도 마찰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노사분규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sup>8)</sup>

기혼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업종은 섬유, 신발, 완구, 전자업종이며 앞에서 본 것처럼 임시고용도 많다.

도자기업체인 행남사의 경우는 1990년에 신입여사원 143명 중 95명을 기혼여성으로 채용했다. 섬유업체인 서광, 반도체선, 부흥사, 진이섬유도 기혼여성의 고용이 20%선으로 증가하였고 타섬유업체로 확산되고 있다.

7) 「한겨레신문」, 1990년 2월 2일자.

8) 「매일경제신문」, 1990년 5월 27일자.

신발업체인 국제상사도 현재 15%가 기혼여성인데 이를 20%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혼여성 노동자의 증가는 여성이 평생직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더 열악한 조건의 대체고용의 형태로 진행되는 데 문제가 있다.

### 3. 모성보호

모성보호는 여성이 지닌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기능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기능으로 보호하며, 모성을 지닌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게 일할 수 있는 남녀평등의 조건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여성노동자에 관한 여러 보호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은 직장에서의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가사노동의 이중의 노동을 힘겹게 해나가고 있으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기혼여성 노동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리휴가는 없거나 생리수당으로 대체되고 육아휴직은 커녕 산전산후휴가조차 지켜지지 않으며 임신이 퇴직으로 연결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생노동권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평생직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생리휴가, 수유시간, 육아휴직 등을 확보해 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1990년을 ‘모성보호의 해’로 설정하였다. 여성노동자의 권리의를 더욱 향상시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성보호를 쟁취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부의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현실적인 탁아제도에 대한 고려

가 없으며 국가의 의지와 책임이 극히 미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한편, 여성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한 모성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직업병의 실태는 심각하며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 1) 탁아현실과 탁아제도의 문제점

#### (1) 탁아현실

1990년 3월 9일 서울 3평 크기의 지하 셋방에서 불이 나 혜영, 용철 남매가 질식사했다. 이 남매의 부모는 맞벌이부부로 월 5만 원의 부담으로 남매를 인근 탁아소에 맡기고자 했으나 시간이 맞지 않아 포기하고, 아이들을 방에 놓아둔 채 밖에서 문을 잠그고 직장에 다녔다. 문이 잠겨져 있었으므로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1989년 말 현재 노동부는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수를 47만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종업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면 전체 기혼여성 노동자수는 1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가운데 기혼여성 노동자의 92.6%가 탁아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66.2%가 탁아문제가 해결되면 직장을 갖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sup>9)</sup>

보사부에서는 기혼여성 노동자의 자녀 150만 명(0~5세) 중 탁아소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8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저소득층지역 탁아대상아동은 8만 6천 명, 산업체 및 공단지역은 9만 명, 일반지역은 64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유아원’ 등 국공립시설에서 종일반으로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는 1만 명, 그외에 민간탁아소에 5천 명이 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탁아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0)</sup>

9) 「동아일보」, 1990년 11월 7일자.

## (2) 탁아법의 개정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이러한 탁아현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왔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과 제도적 차원의 입법화를 요구해왔다.

사실 1982년 2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탁아시설의 설치 근거를 삭제한 이래 우리나라의 탁아정책은 공백상태와 다름없었다. 1980년 이후 기혼여성의 계속된 취업률 증가와 사회 참여로 말미암아 탁아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 비영리 탁아소가 전국적으로 200여 곳이나 생겨나 실질적인 탁아수요자의 요구를 일부뿐이나 채워왔다. 이들 지역탁아소들은 대개 개인이나 단체의 재정 후원과 헌옷바자회 등 불안정한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어렵게 유지되고 있으며, 아직은 숫적으로나 시설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대되어가는 탁아의 수요를 외면할 수 없게 되자 정부당국에서는 1989년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탁아문제에 손을 대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가의 탁아소 설립의무규정이 없으며, 부지면적을 80평 이상으로 규정하여 비영리 민간탁아소를 부정하고 있고 수혜대상을 월수입 4만 6천 원 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로 설정하고 있어 생산직과 농어촌 근로여성의 자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한편 정부의 제반조치와 아동복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 2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탁아입법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바른 탁아입법을 위한 여론형성에 나섰다. 또한 1990년 8월에는 정부의 무리한 탁아소강제신고(신고기한 9월 18일)를 거부하면서 「지역사회탁아소자모회」가 중심이 되어 '신고거부 및 올바른 탁아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을 벌여 4만 명의 서명

10) 한국여성단체연합탁아문제특별위원회, 「탁아실태와 올바른 탁아정책의 방향」, 9쪽.

을 받기도 했다. 이어 1990년 11월 24일 민자당 탁아법(안)에 관한 “탁아 입법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12월 14일 국회보사위는 찬반토론 없이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민자당의 「영유아보육법(안)」을 민자당 보사위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3) 영유아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 발표해왔던 탁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 33조 부칙 7조로 이루어진 민자당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탁아소의 양적인 확대를 꾀하겠다고 했으나 설립주체의 확대만 있을 뿐 정부의 책임과 지원의지가 불투명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 바로 이틀 뒤인 1990년 12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탁아문제특별위원회」와 「지역사회탁아소자모회」가 공동주최로 ‘민자당 영유아보육법을 규탄하는 대회’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어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여성계와 탁아소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책임과 의지가 희박하다.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과 달리 제21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지가 극히 미약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인해 민간영리사업으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지원대상에 문제가 있다.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에 한해 보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탁아가 필요한 광범위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아니라 도시저소득층, 농어촌가정 등으로 보다 현실적인 지원대상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셋째, 탁아소 규제의 문제이다. 제12조 4항의 경우 막연히 이 법이나

이에 의거한 명령을 위반할 때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부에서 편의적으로 탁아소의 존립을 위협하고 부당한 간섭을 낳을 소지가 있다.

넷째, 민간탁아소의 지원 및 시설분류의 문제이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중 가정보육시설은 신고로 나머지 시설은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의 시설규모가 확실치 않으며 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하다.

국공립시설이나 영리탁아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반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 탁아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여성단체에서 제시하는 탁아법에 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아동을 올바르게 보호·교육하기 위한 재정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 2)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예 : 차등보육료제 실시).
- 3)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아동교육에서 아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이 아닌 국민의 요구나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창조적인 교육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4) 탁아사업의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중립적인 민간자율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 5)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비영리 탁아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이 필요하다.
- 6) 탁아법 재정의 중요한 사항을 모두 법에 명시하여 행정편의적이거나 관주도적인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sup>11)</sup>

11) 지역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 제8호.

〈표 11〉 제조업 업종별 남녀 노동자 비율과 임금 수준

업종	여성노동자수	업종내여성비율(%)	임금 수준
제조업 전체	642,635	43.4	100
섬유 제조업	152,697	65.9	83.9
의복 제조업	82,472	79.4	68.1
신발 제조업	42,173	68.3	76.6
고무 제조업	45,642	51.0	88.2
전기 기계	147,161	58.9	87.4
기타 제조업	31,556	55.3	75.5
광학 계측기	8,025	51.0	86.4
도기·자기	5,206	47.4	77.5
기계 제조업	5,631	7.9	128.5
철강 제품	2,419	6.7	149.2
제1차 금속산업	2,796	6.4	145.2
비금속 제품	377	5.1	125.1
운수 장비	12,542	9.3	143.6

자료 :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89년 12월.

## 2) 여성노동자와 직업병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의 53.4%, 즉 약 절반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으면서 남성노동자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남 : 53.1시간, 여 : 54.3시간). 그러면서도 여성의 생리적 특성과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보호의 측면에 대한 고려조차 없어 여성노동자들은 각종 질병과 직업병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1990년 4월 초 수은중독이 밝혀지게 된 오리엔트전자의 경우만 보아

도, 20년 동안 단 한번도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았으며, 노조에서 나서서 검사를 받고 위험부서에서 일하는 11명 모두 수은중독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과 노동부는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직업병이 발생한 뒤에도 은폐하고 충분한 의료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정부와 사용자는 묵시적 또는 노골적으로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와 사용자의 태도 때문에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실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통계수치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형편이다.

여성노동자의 직업병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첫째, 여성노동자는 주로 섬유제조업, 신발제조업, 전기기계제조업, 그리고 단순사무직 및 서비스업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봉제 또는 방직업체의 여성노동자의 경우 면분진에 의한 면폐증, 원단의 표백과 염색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소음과 진동에 의한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전자업체의 경우는 유기용제 중독, 납중독, 에폭시수지에 의한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지가 타면서 생기는 연기에도 각종 유해물질 즉 페놀, 포름알데히드, 스틸렌, 염소화 디페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장해를 일으킨다.

또한 업무의 전산화가 급증하면서 단순사무직 중에 키보드 작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컴퓨터를 취급하는 노동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신종 직업병으로 반복되는 손놀림에 의하여 손의 건에 염증이 오고 이로 인하여 통증, 강직, 감각이상, 운동장애가 생기는 경건완장애와 단말기증후군(VDT증후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여성노동자는 직장에서의 장시간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의 노동을 하고 있다. 작업시간이 길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며, 피로가 심한 경우나 전신의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에도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셋째, 여성노동자는 과중한 노동과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월경장

애, 불임, 조산, 사산 등을 일으키는 등 모성기능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sup>12)</sup>

끝으로 1990년에 발생한 여성노동자들의 직업병은 다음과 같다.

- 4월 초 : 구로공단 오리엔트전자 조합원 11명 수은중독 발견(고대 환경의학연구소)
- 4월 : 국제전화교환원 29명 경건완장애 판정(산업의학센터 조사)
- 6월 28일 : 부산, 경남지역 금속기계 및 전자제품 공장노동자 43명 유기용제 TEC중독 발견(4개 업종 20개 업체 노동자 101명 대상 조사, 부산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 7월 : VDT취급 노동자 3천 8백 명 중 18.2%인 692명이 단말기증후군을 나타냄(중앙대의대 김재찬 교수 발표)

12) 한국여성단체연합노동위원회, 「직업병과 모성보호」, 1990년 9월 27일.

제 2 장

# 노동자의 주택문제

1990년 벽두부터 전월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1989년 한해 동안 전세값은 17.6%가 올랐고 특히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1990년 2월 한달 동안 무려 14.5%나 상승하였다.<sup>1)</sup>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전세값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아 50%를 상회했다.<sup>2)</sup>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살면서 모든 돈을 고스란히 오른 집세로 넣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빚을 지기도 했다. 그리고 방을 줄여가고 번두리로 우울한 발걸음을 옮겼다. 오른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한 성남의 50대 실직자는 방안 냉장고 손잡이에 목을 매어 자살하고,<sup>3)</sup> 전세값 2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의 20대 노동자는 서투른 강도짓을 하기도 했다.<sup>4)</sup>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이 주거공간이라기보다 투기, 재산증식

1) 「조선일보」, 1990년 3월 24일자.  
 2) 1990년 1~2월, YWCA 시민중계실 집계 가옥주의 인상요구율 : 아파트 66%, 단독주택 54.9%, 연립주택 46%로 평균 59.5%.  
 3) 「중앙일보」, 1990년 3월 22일자.  
 4) 「한겨레신문」, 1990년 3월 24일자.

의 수단이 되어, 노동자들이 내일의 노동을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1990년도 노동자 주택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가구의 67.5%는 무주택가구이다. 100명 중 67~68명은 자기집이 없다. 또한 임대료의 급상승으로 노동자가구의 외곽, 하향이동이 두드러졌다.

둘째, 임금상승률을 웃도는 임대료 상승으로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노동자의 주거생활을 압박하면서 아울러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주거면적은 좁아지고 있다.

셋째, 정부는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인식하여 1990년을 '근로자 주거 안정의 해'로 지정하고 근로복지주택과 사원임대주택 등의 방안을 내놓았으나, 절대량이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 또한 기업의 참여도 임대주택보다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분양주택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 1. 노동자의 주거현황

우리나라 제조업체 기혼노동자는 4명 중 3명이 셋집이나 사택에 살고 있다. 1990년 8월, 국토개발연구원이 10인 이상 고용 192개 제조업체 노동자 4천4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자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표 1〉 주거유형별 노동자 가구 현황 (단위: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전체	17.8	57.0	21.6	3.6
가구주	22.8	61.1	14.8	1.3

자료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생계비 모형 재정을 위한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1990. 10.

〈표 2〉 땅값·집값·전세값 상승률 비교 (단위: 전년대비, %)

	1987.12	1988.12	1989.12	1990.9	1990.9(1985.12=100.0)
땅값	14.7	27.5	32.0	16.5	241.2
집값	7.2	13.1	14.6	17.4	158.8
전세값	19.2	13.8	17.8	18.9	199.8

자료: 건설부, 『지가동향』; 한국주택은행, 『주택금융』

〈표 3〉 5인가족 최저생계비 비목별 증감추이 (단위: 전년대비, %)

구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식료품비	8.0	5.2	5.3	4.8	1.6	7.0	15.1	8.6
주거비	18.3	24.7	16.6	9.6	-5.8	8.8	20.1	43.5
광열비	3.5	2.0	1.9	7.4	0.3	10.4	2.1	-0.5
피복비	0.3	12.4	10.2	6.9	8.5	9.9	17.4	35.4
교육비	17.1	3.2	3.0	8.7	-10.3	10.1	12.1	5.7
교통비	23.9	0	0	11.5	4.8	0	10.5	4.2
보건위생비	18.0	19.3	5.5	-1.5	9.7	65.7	-4.9	10.1
잡비	3.8	6.6	0.4	49.1	-27.8	7.8	8.5	20.1
저축	-	-	-	-	-	-	-	-
조세공과금	-22.9	19.7	17.3	22.0	2.6	29.4	51.8	-2.1
소비지출계	11.0	10.1	7.3	7.7	-1.6	12.3	12.8	19.7
비소비지출계	-22.9	19.7	17.3	22.0	40.7	21.5	40.2	-1.8
생계비 합계	8.1	10.7	8.0	8.1	1.9	13.3	16.1	16.6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 1989. 12.

노동자로서 무주택자인 사람은 74.9%로, 1989년 67.5%(1989년 6월 현재, 국토개발원)보다 7.4% 증가하였으며, 지난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결과 밝혀진 무주택자 비율 58.7%를 훨씬 웃돈다.

〈표 4〉 근로소득 대비 주택비 상승비교표

	근로소득지수	임대료지수	주택가격지수
1983	114	140	107
1984	126	137	148
1985	133	152	143
1986	147	160	140
1987	170	178	135
1988	199	209	138
1989. 6	—	268	174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근로자주택의 효과적 추진방안』, 1990. 4.

1990년 10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실시한 '생계비 모형 재정을 위한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조업체 기혼노동자 중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2.8%에 지나지 않으며, 미혼까지를 포함하면 17.8%에 불과하다.

땅값, 집값 상승을 보면, 1987년 하반기 대통령선거와 이듬해 1988년 봄 국회의원선거에서 각종 공약이 남발된 뒤 부동산투기 바람은 서해안지구, 서울지역 아파트 재개발지구, 자연녹지, 심지어는 산간벽촌, 낙도에까지 불어닥쳤다. 그리하여 1985년 7.0%, 1986년 7.3%로 다소 완만하게 오르던 땅값이 1987년에는 14.7%, 1988년 27.5%, 1989년 32.0%로 크게 올랐으며, 1990년 9개월 동안에 다시 16.5% 상승했다. 아울러 전세값은 1989년 한해 동안 17.8% 상승했으며, 1990년 9월까지 다시 18.9% 상승했다.

이로 인한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은 악화되어 〈표 3〉에 나타난 5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비목별 증감추이를 보면, 1986~87년을 제외하고는 주거비상승률이 총생계비상승률을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9년의 경우, 주거비상승률이 무려 43.5%에 달해 전체 생계비상승률 16.6%의 총 2.6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지수와 임대료지수를



〈표 5〉 전세평수 및 방수, 전세액 비교

	1989년(가구주)	1990년(가구주)
방수(개)	1.65	1.54
평수(평)	11.27	9.85
전세액(만 원)	676.0	840.6
평당 전세액(만 원)	60.0	85.3

자료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생계비 모형 재정을 위한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1990. 10.

〈표 6〉 점유형태별 사용면적 및 방수 (단위 : 평, 개, 인)

점유형태	사용면적	사용방수	방당 사용인수
자 가	17.7	2.5	4.23 / 2.51=1.7
전 세	11.6	1.8	4.57 / 1.75=2.6
보 월	12.7	1.5	3.78 / 1.48=2.6
기 타	6.5	1.5	3.67 / 1.50=2.5

자료 : 윤인숙, 「서울지역 생산직 노동자 주거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환경대학원 논문, 1991. 2.

비교해보면, 소득보다 높은 임대료상승이 1983년 이후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상승하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외곽, 하향이동이 1990년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 2동 지하 방 2칸에서 4식구가 8백만 원에 함께 살아 온 김모씨(32세, 회사원)는 전세보증금을 1천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할 수 없이 1990년 3월 11일 규모를 줄여 같은 동네 지하 방 1칸으로 옮겼다.

김씨가 옮겨간 이 방은 보증금 5백만 원에 부인과 국민학교에 갓 입학한 딸과 함께 박영수씨(30세, 시계공장노동자)가 살았었다. 박씨는 3백만 원이

〈표 7〉 전·월세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거수준 (단위 : %)

구 분	37.5만원 이하	37.5~50만원	50~62.5만원	62.5만원 이상	계
	전용시설이 이용분포	방+거실+부엌 +화장실+목욕탕	방+부엌+화장실 +목욕탕	방+부엌+화장실	
	15.9	32.5	39.9	48.5	31.7
	8.5	17.0	18.1	19.0	14.9
	14.5	16.5	15.8	11.4	14.9
	61.2	34.0	26.2	21.1	38.9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설문조사(198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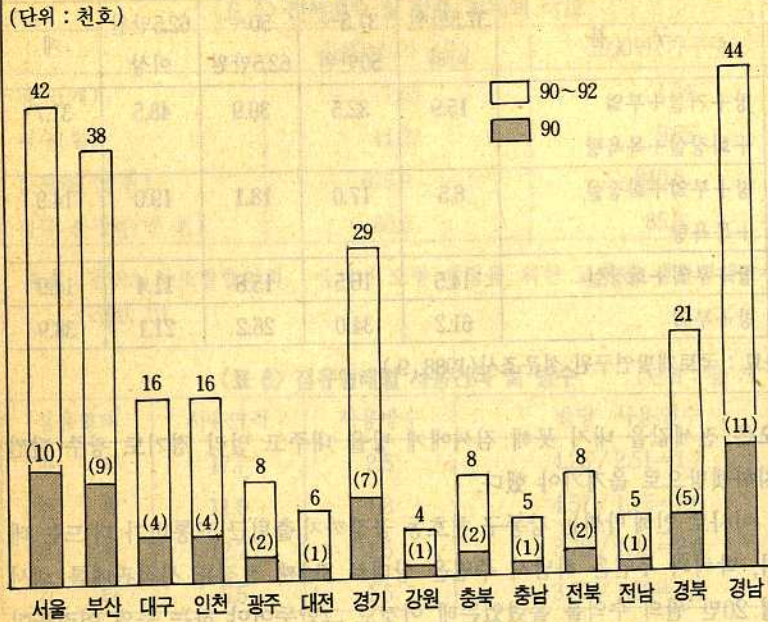
오른 전세값을 내지 못해 김씨에게 방을 내주고 멀리 경기도 광주 단칸 지하셋방으로 옮겨가야 했다.

이사로 인해 박씨는 강동구 천호동 공장까지 출퇴근 교통비가 더 드는 데다, 박씨의 부인은 하남시 주민을 상대로 3년째 전집류 서적판매를 해서 월 20만 원의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것도 그만두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생겼다. 더군다나 국민학교에 갓 입학한 딸아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정을 붙일 사이도 없이 낯선 곳에서 외톨이로 지내는 것이 가슴아픈 일이다(「한겨레신문」, 1990년 3월 22일자).

「89년 전노협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전세거주 노동자의 방수는 1.65개에서 1.54개로 줄었고, 평수도 11.27평에서 9.87평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액은 오히려 165만 원이나 상승했다. 또한 1990년 7~8월 사이 서울시 10개 제조업체 생산직노동자 4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논문을 보면 평균가구수는 3.2가구이며, 방당 사용인수는 전세, 월세의 경우 각각 2.6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주거면적은 감소하고 집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거인의 수가 늘어났다.

서울 구로공단 일대 닭장집의 월세 가격이 1987년 4만 원에서 1990년에는 9만 원으로 오름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은 2인에서 3

〈표 8〉 근로자주택건설계획



자료 : 건설부, 『근로자주택건설 시행계획』, 1990. 5. 12.

~4인으로 동거인수를 늘이기도 했다.

끝으로 주거수준도 매우 열악하여 198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입식부엌시설 34.1%, 수세식 화장실 33.6%에 불과하며 국토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목욕시설은 전체대상자의 53.8%가 없고, 약 40%가 가구전용 화장실이 없는 실정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1990년 들어 무주택노동자는 증가하여 4명 중 3명 꼴로 자신의 집이 없으며 1년마다 거주이전의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선회하는 임대료 상승으로 노동자 가계에서 주거비 부담률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동거가구와 방당 사용인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다음날의 힘찬 노동을 위해 자기 몸 하나 누이고 편히 쉴 수 있는 방안 칸이 제대로 없는 불안정한 주거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2. 근로자주택의 현황

땅값, 집값, 전월세값 폭등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990년을 “근로자 주거 안정의 해”로 선포하면서 1990년 1월 18일, 「근로자복지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990~92년 사이에 근로복지주택 15만 호, 사원임대주택 10만 호 등 총 25만 호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공급체별로 보면 주택공사가 6만 호, 지방자치단체가 9만 호로서 공공부분이 15만 호를, 그리고 주택업체 및 기업이 10만 호를 공급하게 되어 있다. 근로자주택 건설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이 8만 6천9백 호를 배정받아 전체물량 25만 호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과 5대 직할시의 물량은 12만 4천 호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주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음을 알 수

〈표 9〉 연도별 정부용자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 (단위 : 억원, 만호)

구분	1990~92	1990	1991	1992
소요재원	30,000억 (25만호)	7,200 (6)	9,600 (8)	13,200 (11)
근로복지	1조 8,000억 (15만호)	4,800 (4)	6,000 (5)	7,200 (6)
사원 임대	1조 2,000억 (10만호)	2,400 (2)	3,600 (3)	6,000 (5)
조달방안	30,000억	7,200	9,600	13,200
국민주택기금	24,000	7,200	9,600	10,200
예탁금	6,000	—	3,000	3,000

자료 : 건설부, 『근로자주거안정대책』, 1990.

〈표 10〉 근로자주택의 건립규모와 용자조건

구 분	근로복지	사원임대
용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공동건설도 포함)</li> <li>•주공·지방자치단체·주택사업자(기업이 배정받아 근로자에게 분양)</li> <li>•주택분양시 입주자에 대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공동건설도 포함)</li> <li>•주공·지방자치단체·주택사업자(기업이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임대)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기업에 대한</li> </ul>
주택 규모	전용면적 7~15평(공용포함 11~20평 내외)	전용면적 7~15평(공용포함 11~20평 내외)
호당용자한도	1,200만원	1,200만원
용자기간	5년 거치 20년 상환	5년 거치 20년 상환
이 율	거치기간 연 8% 상환기간 연 10%	연 3%

자료 : 건설부, 『근로자 주거안정대책』, 1990.

있다.

정부는 이 주택건설을 위한 4조 2천5백억 원의 건설비 중 3조 원을 국민주택기금과 각종 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탁금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마련과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1990년 6월 23일 상공부와 건설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1990년도에 지을 예정인 4만 호의 근로복지주택 중 17.7%, 그리고 사원임대주택은 2만 호 중 4천4백 호로 2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택지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근로자주택의 건립규모와 용자조건을 보면, 근로복지주택은 전용면적 7평에서 15평 크기로 지어지며, 호당 1천2백만 원을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용자한다. 이자율은 거치기간에는 해마다 8%씩 내고, 6차년부터는 연 10%가 적용되어 있다. 사원용 임대주택은 이자율이 장기임대

〈표 11〉 공단·비공단별 노동자 주거현황 (단위 : 만명, %)

구 분	공 단	비 공 단	계
전근로자	103(100)	340(100)	443(100)
기 혼	54(52.4)	214(62.9)	268(60.5)
기혼무주택자	35(64.8)	118(55.1)	153(57.1)
임금계층별 기혼 무주택자수 계	35(100)	118(100)	153(100)
30만원 미만	4(11.4)	26(22.0)	30(19.6)
30-40만원	4(11.4)	30(25.4)	34(22.2)
40-50만원	8(22.9)	27(22.9)	35(22.9)
50-60만원	13(37.1)	19(16.1)	32(20.9)
60만원 이상	10(28.6)	12(10.2)	22(14.4)

자료 : 건설부, 『근로자주택건설 회의자료』, 1990. 3.

주 : ( )안의 수치는 구성비(%)를 표시함.

주택처럼 3%이며, 나머지 평수, 용자금, 상황조건 등은 근로복지주택과 같다.

노동자가 이렇게 지어지는 근로자주택에 입주해서 살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예 : 15평 분양용 근로복지주택의 경우)

- 건축비 : 약 3천만 원
- 용자 : 국민주택기금 1천2백만 원, 5년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 이자는 초기 5년 8%, 6년 이후 10%, 사내용자 300만 원 무이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

이와 같은 용자상환부담액에 관리비, 난방비 등을 합하면 월 주거비는 17~18만 원이 되고 이들의 소득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30%로 보더라도 전용면적 15평짜리 근로자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어도 월

6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 11>과 같이 기존 무주택노동자 중 1990년 3월 현재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가 41.8%, 60만 원 이하는 62.7%로 60만 원 이상인 노동자는 14.4%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근로자주택 건설에 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근로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기업의 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아 1990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인접대지와외의 거리를 짧게 하였고, 녹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도 공장, 집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여천, 울산 등 주요 공단 부근 녹지지역의 건축규제가 완화되었으며, 현대엔진은 회사소유 임야 3천 평에 15층짜리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러한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은 자본의 합법적인 땅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소리가 높다. 삼성그룹이 사원주택을 짓기로 한 12만 평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밝혀졌다.<sup>5)</sup>

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건설에 따라 1990년 4월 현재 무주택노동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7.1%에 불과하며, 사원주택건설계획 의사가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25.6%이다. 노동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계획을 확정된 28개 그룹 중 분양이 45%로 가장 많고 조합주택 23%, 사택 21%순이다.

사원용 분양주택의 경우 노동자와 회사의 부담비율을 보면 회사와 정부 부담이 47.8%로 노동자 부담 53.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럭키금성 그룹의 경우 20평형 사원용주택 5천 가구를 지을 예정인데 가격은 가구당 2천6백만 원이다. 그 중 1천3백만 원은 노동자가 부담하며, 1천3백만 원은 정부용자 8백만 원, 회사용자 5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입주하는

5) 한상진·한상연, 『집의 경제학』, 153쪽.

<표 12>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기금조성 유무

구 분	사 업 체 수	구 성 비 (%)
조성하고 있음	12	7.1
조성하고 있지 않음	156	92.9
계	168	100.0

자료 : 경총부설연구원, 「근로자주택지원실태조사」, 1990. 4.

<표 13> 사원용 분양주택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종업원과 회사의 부담비율의 평균

구 분	주택구입자금의 부담비율	응답사업체수(계)
회사와 정부 부담	47.8	25
종업원 부담	53.2	

자료 : 경총부설연구원, 「근로자주택지원실태조사」, 1990. 4.

노동자의 경우 1천3백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어야 하며 용자를 다달이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끝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면, •생산직, 사무직 근로자로서 임원이 아닌 자, •10인 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의 근로자,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로서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월소득 80만 원 이하(과년도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인 자로 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것듯이 기존 노동자의 51%가 월소득 50만 원 미만인데 월소득 80만 원 이하인 자로 정하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너무 넓다는 소리가 높다.

### 3. 주택관련 노동자의 요구

1990년 봄에는 임금인상요구안이나 단체협약안에 주거안정 요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두드러졌다. 이는 주거사정이 날로 악화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요구에